

국립대학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특정감사 지적사항 및 처분내용

1. 감사개요

- 감사대상 : 38개 전체 국립대학
- 감사기간 : 2021. 5. 24. ~ 7. 16. (학교당 5일)
- ※ 일부 대학에 대해서는 추가 현지감사 실시

2. 지적내용 및 처분

대학명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분
강릉 원주대	1. 학생지도비 실적 제출 부적정	<p>【학생지도 실적과 초과근무, 출장 실적 중복 관련】 - 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 1명은 2018. 10. 15. 18:00부터 23:00까지 초과근무 중으로 학생지도 불가함에도 같은 날 18:30부터 19:30까지 '신입생 추수지도' 실적을 제출하여 학생지도비 302,400원 수령 ○ 직원 1명은 2018. 11. 21.부터 11. 23.까지 출장 중으로 학생지도가 불가함에도 2018. 11. 22. 12:00부터 13:00까지 'SLC연계 비교과활동 지도'를 하였다는 실적을 제출하여 학생지도비 302,400원 수령 <p>【학생지도실적과 근무시간 중복 관련】 - 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 2명은 근무시간 내 학생지도 실적 총 2건을 제출하여 학생지도비 합계 300,000원 수령 <p>【학생지도실적과 강의시간 중복 관련】 - ③</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 28명은 수업을 하고 있어 학생지도가 불가함에도 동일(중복) 시간에 학생상담 총 178회를 실시한 것으로 학생지도 실적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징계 - 1명 ○ 경징계 - 1명 ○ 경고 - 9명 ○ 주의 - 21명 ○ 시정(회수) - 부적정하게 지급된 학생지도비 합계 32,808,000원을 당사자들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 하기 바람

대학명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2. 교육영역 자체 집행 기준 운영 부적정	<p>제출하여 학생지도비 합계 31,903,200원 수령</p> <p>【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18~'20학년도 국립대학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4.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관련 가이드라인】</p> <p>○ '2018~2020학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 계획을 수립하면서 강의를 실시하지 않는 OO에 대한 교육영역 교연비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해 별도의 예외 규정을 두고, '교육 관련 협약 체결' 실적을 OO의 교육영역 선택지표 실적으로 인정하여 교연비 합계 12,900,000원 지급</p> <p>【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가이드라인】</p>	<p>○ 기관경고</p> <p>○ 통보</p> <p>- 교육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교연비 지급계획을 운영하기 바람</p>
강원대	3. 교연비 지급 계획 공개 지연 및 미공개	<p>○ '19년~'21년까지 교연비 지급 계획을 공개 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공개</p> <p>【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p>	○ 기관주의
	4. 학생지도비 실적 인정 부적정	<p>【부설학교 근무기간 실적 인정 관련】 - ①</p> <p>○ 부설학교 근무기간(3개월)을 제외하지 않고 교연비 산정대상 기간을 1년으로 적용하여 직원 1명에게 학생지도비 1,450천원 과다 지급</p> <p>【통상업무 실적 인정 관련】 - ②</p> <p>○ 교직원 4명이 자신의 부서에서 주관하는 재해 예방 안전지도에 참여한 실적 총 21시간을 제출하였음에도 이를 인정하여 학생지도비 합계 6,090,000원 지급</p>	<p><①, ②관련></p> <p>○ 주의</p> <p>- 2명</p> <p><② 관련></p> <p>○ 기관주의</p> <p><①, ②관련></p> <p>○ 시정(회수)</p> <p>- 부적정하게 지급된 학생지도비 7,540천 원(①)</p>

대학명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p>【부실 상담, 멘토링 실적 인정 관련】 - ③</p> <p>○ 교직원 374명이 함께 2,439건의 기준 미달 (100자, 200자 미만) 상담내역 등을 실적으로 제출하였음에도 이를 인정</p> <p>【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2018학년도 국립대학회계 예산편성 기본 지침(교육부)」 4.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가이드라인】</p>	<p>1,450천원 + ② 6,090천원)을 관련자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p> <p><③ 관련></p> <p>○ 기관주의</p> <p>○ 개선</p> <p>- 꿈-설계 상담 내역 및 멘토링 프로그램 활동 실적이 부실하게 작성되지 않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바람</p>
	<p>5. 학생지도비 실적 제출 부적정</p>	<p>○ 교직원 4명은 근무시간 내 학생지도 실적 총 53건을 제출하여 학생지도비 합계 10,295,000원 수령</p> <p>【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가이드라인】</p>	<p>○ 중징계</p> <p>- 1명</p> <p>○ 경고</p> <p>- 1명</p> <p>○ 주의</p> <p>- 2명</p> <p>○ 시정(회수)</p> <p>- 부적정하게 지급된 학생지도비 합계 10,295천원을 당사자들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 조치하기 바람</p>

대학명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분
	6. 교육영역 실적 심사 부적정	<p>【교육영역 실적심사 부실 운영】 - 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 43명이 제출한 강의개선보고서가 보고서 양식대로 기재되지 않았거나 수업평가 결과 분석 및 개선사항 등이 인정기준에 미달되게 작성되었는데도 실적으로 인정하고 교연비 합계 3,350,000원 지급 <p>【교육영역 강의개선보고서 실적 중복 제출】 -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 1명은 2019학년도 1학기 3개 과목 강의 개선보고서를 OOOOOOO센터에 실적으로 제출 하여야 함에도, OOOOOOO센터 및 OOOOO원에 각각 실적으로 제출하여 교연비 270,000원을 지급받아 120,000원 과다 수령 <p>【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p>	<p><①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경고 ○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대학회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기준에 미달하는 실적은 인정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 <p><②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명 ○ 시정(회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당하게 지급된 교연비 합계 120,000원을 조 교수 OOO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 하기 바람
	7. 연구영역 동일 실적물 중복 제출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 3명은 기 발표한 연구실적물과 동일한 연구계획서 및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 교연비 합계 15,000천원 수령 <p>【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가이드라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징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명 ○ 시정(회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정하게 지급된 교연비 합계 15,000천원을 교수 OOO 등 관련자 3명으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 하기 바람

대학명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분
경북대	8. 학생지도비 실적 제출 부적정	<p>【학생지도 실적과 출장 중복 관련】 - 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직원 228명은 관내·외 출장으로 동일(중복) 시간에 학생지도가 불가함에도 학생지도 실적 총 645건을 제출하여 학생지도비 합계 107,265,700원 수령 <p>【학생지도 실적과 근무상황(복무) 중복 관련】 - 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직원 103명은 연가, 공가, 조퇴 등으로 학생지도가 불가함에도 지도상담 등 학생지도 실적 총 223건을 제출하여 학생지도비 합계 30,331,500원 수령 <p>【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가이드라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징계 - 3명 ○ 경고 - 45명 ○ 주의 - 250명 ○ 시정(회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정하게 지급된 학생지도비 합계 137,597,200원을 당사자들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 하기 바람
	9. 통상업무 학생지도 실적 인정 및 실적 심사 부적정	<p>【통상업무 학생지도 실적 인정 부적정】 -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직원의 통상 업무 수행을 학생지도 실적으로 인정하는 지침을 마련하고 조교 68명이 제출한 장학금 안내, 수강신청, 성적 지도 등 조교 본연의 업무인 실적 총 491건을 학생지도(선택사업) 실적으로 인정하여 학생지도비 합계 49,100천원 지급 <p>【학생지도비 실적심사 부실 운영】 - 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지도 등에 실제 참여하여 수행한 활동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 실적을 심사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지 않고 학생지도 영역의 평가 대상자가 제출한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만 제출받고 사진자료 등 증빙자료 없이 평가대상자가 전산입력한 자료만으로 형식적 심사를 한 후 학생지도 실적을 인정하고 학생지도비 지급 	<p><①, ②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경고 <① 관련> ○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대학회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학사지도 등 통상업무수행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 <② 관련> ○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인 증빙을 통해 실적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대학명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분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가이드라인】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람
	10.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심사위원회 구성 부적정	<p>○ 12개 단과대학에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심사위원회를 모두 동일 직종인 교원만으로 구성하여 운영</p> <p>【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가이드라인】</p>	<p>○ 기관경고</p> <p>○ 통보</p> <p>-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심사위원회 구성 시 교원·직원·조교 등 모든 직종이 참여하도록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기 바람</p>
	11. 연구영역 동일 실적물 중복 제출 부적정	<p>○ 교수 10명은 동일한 논문 등 연구실적물을 교연비 연구영역 항목 실적으로 중복 제출하여 ‘우수연구업적 장려금’ 합계 4,718,140원 수령</p> <p>【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p>	<p>○ 경고</p> <p>- 3명</p> <p>○ 주의</p> <p>- 7명</p> <p>○ 시정(회수)</p> <p>- 부적정하게 지급된 교연비 합계 4,718,140원을 OO대학 당사자들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p>
	12. 징계처분자 교연비 지급 부적정	○ 정직 1월 처분을 받은 교수 1명에 대해 정직 기간을 제외한 후 월할 계산하여 교연비를 산정하지 않고 6,183,770원 전액을 2017회계연도 교연비 교육·연구영역 지원비용으로 산정하여 515,310원 과다 지급	<p>○ 주의</p> <p>- 2명</p> <p>○ 시정(회수)</p> <p>- 과다 지급한 교육·연구 영역 1개월분 합계 515,310원을</p>

대학명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분
		<p>【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2017학년도 경북대학교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 계획】</p>	<p>당사자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 하기 바람</p>
경상 국립대	13. 개인차량 입·출차 관련 학생지도 실적 인정 부적정	<p>○ 교직원 126명의 개인차량이 입·출차기록상 교내에 부재중으로 교직원들이 제출한 학생지도 실적 시간에는 학생지도가 불가함에도 총 501회에 걸친 학생지도 실적을 인정하여 학생지도비 합계 68,700,000원 지급</p> <p>【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가이드라인】</p>	<p>○ 기관경고</p> <p>○ 시정(회수)</p> <p>- 부적정하게 지급된 학생지도비 합계 68,700,000원을 관련자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 조치하기 바람</p>
	14. 학생지도비 실적 제출 부적정	<p>【근무시간 내 학생지도 관련】 - ①</p> <p>○ 교직원 80명은 근무시간 내 멘토링 등 학생지도 총 168건의 실적을 제출하여 학생지도비 합계 26,040,000원 수령</p> <p>【학생지도실적과 출장 중복 관련】 - ②</p> <p>○ 교직원 199명은 출장으로 학생지도가 불가함에도 같은 날 동일(중복) 시간에 학생지도 총 390건을 실적으로 제출하여 학생지도비 합계 64,410,000원 수령</p> <p>【학생지도실적과 초과근무 중복 관련】 - ③</p> <p>○ 직원 59명은 초과근무 중으로 학생지도가 불가함에도 같은 날 동일(중복) 시간에 학생지도 총 84건을 실적으로 제출하여 학생지도비 합계 14,500,000원 수령</p> <p>【학생지도실적과 근무상황(복무) 중복 관련】 - ④</p> <p>○ 교직원 106명은 연가 등으로 학생지도가 불가함에도 학생지도 총 212건을 실적으로 제출하여 학생지도비 합계 38,980,000원 수령</p>	<p><①, ②, ③, ④, ⑤, ⑥ 관련></p> <p>○ 중징계</p> <p>- 2명</p> <p>○ 경징계</p> <p>- 14명</p> <p>○ 경고</p> <p>- 159명</p> <p>○ 주의</p> <p>- 359명</p> <p>○ 시정(회수)</p> <p>- 부적정하게 지급된 연번 ①, ②, ③, ④, ⑤, ⑥ 관련 학생지도비 합계</p>

대학명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p>【학생지도 실적과 근로장학생 근로시간 중복 관련】 - 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직원 90명은 근로장학생인 총 123명의 학생이 근무 중으로 학생지도가 불가함에도 같은 날 동일(중복)한 시간에 학생지도 총 165건을 실시한 것으로 실적을 제출하여 학생지도비 합계 26,560,000원 수령 <p>【학생지도 실적과 학생 수업시간 중복 관련】 - 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직원 255명은 학생지도 대상 학생이 수업을 받고 있어 학생지도가 불가함에도 같은 날 동일(중복)한 시간에 학생지도 총 1,462건을 실적으로 제출하여 학생지도비 합계 254,160,000원 수령 <p>【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가이드라인】</p>	<p>424,650,000원을 관련자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p>
	<p>15. 교육영역 지표운영 부적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20학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계획」을 수립하면서 교육영역 자율선택 지표 중 '교수법 이수 및 강의개선계획서'의 실적인정 기준을 교수법 이수 후 강의개선 계획서 제출로 설정하여 실제 강의개선으로 이어진 증빙 확인 없이 교육영역(자율선택지표) 실적인정 기준을 운영하고 2018학년도부터 2020학년도까지 3년간 경상대학교는 교원 713명에게 교연비 636,700천원을 지급하고, 경남과기대는 교원 4명에게 교연비 1,250천원 지급 <p>【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가이드라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경고 ○ 통보 -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기준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표를 설정하기 바람
<p>공주대</p>	<p>16. 학생지도비 실적 제출 부적정</p>	<p>【학생지도 실적과 초과근무 실적 중복】 - 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직원 2명은 초과근무로 학생지도가 불가함에도 학생지도 총 2건을 실적으로 제출하여 학생지도비 합계 250,800원 수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징계 - 4명 ○ 경고 - 13명

대학명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p>【학생지도 실적과 출장 중복】 - 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직원 18명은 출장으로 학생지도가 불가함에도 같은 날 중복된 시간에 학생지도 총 52건을 실적으로 제출하여 학생지도비 합계 4,778,770원 수령 <p>【학생지도 실적과 근무상황(연가 등) 중복】 - ③</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직원 45명은 연가 등으로 학생지도가 불가함에도 같은 날 중복된 시간에 학생지도 총 73건을 실적으로 제출하여 학생지도비 합계 9,381,920원 수령 <p>【학생지도 실적과 근로장학생 근로시간과 중복】 -④</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직원 4명은 근로장학생인 4명의 학생이 근무 중으로 학생지도가 불가한 시간에 학생지도 총 14건의 실적을 제출하여 학생지도비 합계 3,725,220원 수령 <p>【근무시간 내 학생지도 실적 제출】 - 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직원 16명은 근무시간 내 학생지도 총 66건의 실적을 제출하여 학생지도비 합계 8,037,540원 수령 <p>【학생지도 허위 실적 제출】 - 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직원 10명은 2020학년도 실제 활동을 하지 않고도 실시한 것으로 학생지도 실적 총 121건을 제출하여 학생지도비 합계 25,440,000원 수령 <p>【학생지도 비대면 상담 실적 인정】 - ⑦</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 1명은 비대면 실적 인정기준(30분)을 충족하지 않는 상담 실적 총 5건을 제출하여 학생지도비 합계 600,000원 수령 <p>【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가이드라인】</p>	<p>○ 주의 - 67명</p> <p>○ 시정(회수) - 부적정하게 지급된 학생지도비 합계 52,214,250원을 당사자들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p>
	17. 연구영역 실적 인정 및 제출 부적정	<p>【우수학술지 논문게재 장려금 중복 지급】 - 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 27명이 제출한 동일한 논문에 대해 공통지표 및 특별선택지표(우수논문게재장려금) 	<p><① 관련></p> <p>○ 기관경고</p>

대학명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분
		<p>에서 각각 실적을 인정하여 교연비 합계 35,920,900원 중복 지급</p> <p>【제자 학위논문 관련 교연비 실적 제출】 - ②</p> <p>○ 교수 3명은 제자 학위논문을 요약하여 공동저자로 게재하고 동 논문을 실적으로 제출하여 교연비 합계 4,080,000원 수령</p> <p>【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공주대학교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지침, 2018~2020학년도 공주대학교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계획】</p>	<p>○ 통보</p> <p>- 공통지표의 기본 연구실적은 선택지표의 연구실적과 중복 인정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p> <p>○ 시정(회수)</p> <p>- 부적정하게 지급된 교연비 합계 35,920,900원을 0000과 0000 교수 등 27명으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p> <p><② 관련></p> <p>○ 경고</p> <p>- 1명</p> <p>○ 주의</p> <p>- 2명</p> <p>○ 시정(회수)</p> <p>- 부적정하게 지급된 교연비 합계 4,080,000원을 당사자들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p>

대학명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군산대	18.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교육영역 심사위원회 구성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학년도부터 2021학년도 감사일 현재까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영역별 위원회 중 '교육' 영역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심사위원을 모두 교원으로만 구성 <p>【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가이드라인】</p>	○ 기관주의
	19. 학생지도비 실적 제출 부적정	<p>【직원 근무시간 내 학생지도 관련】 - 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직원 22명(직원 20명, 조교 2명)은 근무시간 내에 실시한 학생지도 실적 총 40건을 제출하여 학생지도비 합계 5,710천원 수령 <p>【근로장학생 근로시간중 학생지도】 - 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 3명은 학생지도 대상학생이 근로장학생으로 근무하고 있어 학생지도가 불가함에도 동일한 시간 학생지도 실적 총 6건을 제출하여 학생지도비 합계 300천원 수령 <p>【(직원)학생지도실적과 출장 중복】 - ③</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직원 22명은 출장 등으로 학생지도가 불가함에도 동일한 시간 학생지도 실적 총 35건을 제출하여 학생지도비 합계 2,090천원 수령 <p>【학생지도실적과 초과근무 중복】 - ④</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직원 27명은 초과근무로 학생지도가 불가함에도 동일한 시간 학생지도 실적 총 74건을 제출하여 학생지도비 합계 6,990천원 수령 <p>【(직원)학생지도실적과 복무 중복】 - 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직원 21명은 공가, 병가 등으로 학생지도가 불가함에도 동일(중복)한 시간 학생지도 실적 총 35건을 제출하여 학생지도비 합계 2,200천원 수령 <p>【(교원)학생상담실적과 출장·복무 중복】 - 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 51명은 출장, 자율연수 등으로 학생지도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징계 - 1명 ○ 경고 - 8명 ○ 주의 - 154명 ○ 시정(회수) - 부적정하게 지급된 학생지도비 합계 31,460,000원을 당사자들로 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 조치하기 바람

대학명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p>불가함에도 동일(중복)한 시간 총 221건의 학생지도 실적을 제출하여 학생지도비 합계 5,320천원 수령</p> <p>【동일시간 대 학생지도 실적 중복】 - ⑦</p> <p>○ 교직원 36명이 같은 날, 동일 시간에 실시한 학생지도 실적 2건 이상 총 153건(중복포함)을 각각 인정받고 학생지도비 합계 8,850천원 수령</p> <p>【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가이드라인】</p>	
	20. 책임시수 미달 교원 교육활동비 지급 부적정	<p>○ 교수 18명이 2018학년도 책임시수가 미달되어 교연비 지급 제한 대상임에도 책임시간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교연비 지급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0000원 소관 교육영역 심사위원회 서면심의만으로 교연비 합계 41,400,000원 지급</p> <p>【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군산대학교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계획】</p>	<p>○ 경고 - 3명</p> <p>○ 통보 - 교연비 관련 법령 및 계획을 준수하여 교연비를 지급하기 바람</p>
	21. 교육·연구 학생지도 비용 지급 부적정	<p>○ 2018년도 단과대학별 취업간담회 실적 결과 보고서에 관련 증빙이 첨부되지 않았음에도 특강 실적으로 인정하여 교연비 교육영역 실적금 1,400,000원 지급</p> <p>【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가이드라인】</p>	<p>○ 주의 - 1명</p> <p>○ 시정(회수) - 과다 지급된 교연비 1,400천원을 당사자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p>
금오 공과대	22. 학생지도비 실적 제출 부적정	<p>【근무시간 내 학생지도 실시 관련】 - ①</p> <p>○ 직원 28명은 근무시간 내 학생지도 실적 총 245건을 제출하여 학생지도비 합계 22,782,640원 수령</p>	<p>○ 경징계 - 4명</p> <p>○ 경고 - 21명</p>

대학명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분
		<p>【학생지도 실적과 출장 중복 관련】 - 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 11명은 출장 중으로 학생지도가 불가함에도 같은 날 동일한 시간에 학생지도를 총 12회 실시한 것으로 학생지도 실적을 제출하여 학생지도비 합계 1,080,690원 수령 <p>【학생지도 실적과 초과근무 중복 관련】 - ③</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 23명은 초과근무 중으로 학생지도가 불가함에도 같은 날 동일한 시간에 학생 지도를 실시한 것으로 총 30회 실적을 제출하여 학생지도비 합계 2,812,170원 수령 <p>【학생지도 실적과 근로장학생 근로시간 중복 관련】 - ④</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 17명은 근로장학생인 총 12명의 학생이 근무하고 있어 학생지도가 불가함에도 같은 날 동일한 시간에 학생지도를 실시한 것으로 실적을 총 66회 제출하여 학생지도비 합계 6,136,890원 수령 <p>【학생지도 실적과 근무상황(연가 등) 중복 관련】 - 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 9명은 연가 등으로 학생지도가 불가함에도 같은 날 동일한 시간에 학생지도를 총 14회 실시한 것으로 실적을 제출하여 학생지도비 합계 1,012,410원 수령 <p>【부당 실적자료 제출 관련】 - 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 12명은 허위로 학생지도 실적을 총 121회 제출하여 학생지도비 합계 11,063,580원 수령 <p>【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가이드라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의 - 43명 ○ 시정(회수) - 부적정하게 지급된 연번 ①, ②, ③, ④, ⑤, ⑥ 관련 학생지도비 합계 44,257,700원을 당사자들로 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 조치하기 바람
	23. 연구영역 동일 실적물 중복 제출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 2명은 2018학년도에 제출하여 기본연구비로 교연비를 지급받은 연구과제를 2019학년도 및 2020학년도에 동일한 연구결과물을 실적으로 제출하여 9,200천원 중복 수령 ○ 교수 6명은 기존에 발표되었거나 교내연구 과제 및 기타 재원으로 수행한 연구과제 결과물을 교연비 연구영역 실적으로 제출하여 교연비 합계 18,400천원을 중복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징계 - 2명 ○ 경고 - 6명 ○ 시정(회수)

대학명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분
		<p>수령</p> <p>【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가이드라인】</p>	<p>- '19년부터 '20년 까지 동일 실적물 및 중복과제에 대해 지급된 교연비 합계 27,600천원을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p>
목포대	24. 학생지도비 실적 제출 부적정	<p>【단순 학사안내 등 학생지도 인정 관련】 - ①</p> <p>○ 교직원 16명이 단순학사 안내 등 248회를 학생지도영역 실적으로 제출하였음에도 이를 인정하여 학생지도비 지급</p> <p>【학생지도 실적과 출장 중복 관련】 - ②</p> <p>○ 교직원 29명은 출장으로 학생지도가 불가함에도 동일(중복) 시간에 학생지도를 총 33회를 실시한 것으로 학생지도 실적을 제출하여 학생지도비 합계 2,131,420원 수령</p> <p>【학생지도 실적과 근로장학생 근로시간 중복 관련】 - ③</p> <p>○ 직원 84명은 근로장학생인 총 70명의 학생이 근무 중으로 학생지도가 불가함에도 동일(중복)한 시간에 학생지도 총 293회를 실시한 것으로 실적을 제출하여 학생지도비 합계 19,786,840원 수령</p> <p>【부당 실적자료 제출 관련】 - ④</p> <p>○ 직원 1명은 2018. 3. 7.부터 2021. 1. 13.까지 학생지도영역 학생 멘토링 실적을 총 49회 허위로 제출하여 학생지도비 합계 3,389,820원 과다 수령</p> <p>【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가이드라인】</p>	<p><① 관련></p> <p>○ 기관주의</p> <p><②, ③ 관련></p> <p>○ 경징계 - 1명</p> <p>○ 경고 - 8명</p> <p>○ 주의 - 96명</p> <p>○ 시정(회수) - 부적정하게 지급된 연번 ② ③ ④ 관련 학생지도비 합계 25,308,080원을 당사자들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p>

대학명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분
	25. 교육영역 지표운영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 55명에게 2018학년도부터 2020학년도 까지 초과강의로 함께 90,284천원을 지급하고도 교육영역 선택지표 초과강의 실적으로 인정하여 교연비 함께 13,800천원 중복 지급 <p>【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가이드라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경고 ○ 시정(회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복 지급된 교연비 함께 13,800천원을 당사지들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 조치하기 바람
목포해양대	26. 학생지도비 실적 제출 부적정	<p>【학생지도 실적과 강의시간 중복 관련】 - 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 42명은 담당 과목 수업을 하고 있어 학생지도가 불가함에도 같은 날 동일(중복)한 시간에 학생상담 총 126회를 실시한 것으로 학생지도 실적을 제출하여 학생지도비 함께 34,956,210원 수령 <p>【학생지도 실적과 출장 중복 관련】 - 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 48명은 출장 중으로 학생지도가 불가함에도 같은 날 동일(중복)한 시간에 학생상담 총 118회를 실시한 것으로 학생지도 실적을 제출하여 학생지도비 함께 32,815,494원 수령 <p>【학생지도 실적과 초과근무 중복 관련】 - ③</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직원 35명은 초과근무 중으로 학생지도가 불가함에도 같은 날 동일(중복)한 시간에 학생상담 총 77회를 실시한 것으로 학생지도 실적을 제출하여 학생지도비 함께 22,541,318원 수령 <p>【학생지도 실적과 근로장학생 근로시간 중복 관련】 - ④</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직원 45명은 근로장학생인 학생 55명이 근무 중으로 학생지도가 불가함에도 동일(중복)한 시간에 학생상담 총 74회를 실시한 것으로 실적을 제출하여 학생지도비 함께 21,750,251원 수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징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명 ○ 경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3명 ○ 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0명 ○ 시정(회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정하게 지급된 연번 ①, ②, ③, ④, ⑤, ⑥ 관련 학생지도비 함께 154,446,046원을 당사지들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대학명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분
		<p>【학생지도 실적과 근무상황(연가 등) 중복 관련】 - 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직원 33명은 연가 등을 실시 중임에도 동일(중복)한 시간에 학생 75명에게 학생상담 총 71회를 실시한 것으로 학생지도 실적을 제출하여 학생지도비 합계 21,322,773원 수령 <p>【부당 실적자료 제출 관련】 - 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 6명은 학생 멘토링 학생지도 실적 총 72회를 허위로 제출하여 학생지도비 합계 21,060,000원 수령 <p>【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가이드라인】</p>	
	<p>27. 대학 정책연구 과제 운영 부적정 및 연구 윤리 위반</p>	<p>【정책연구 과제 심사·평가 부실운영】 - 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정책연구 공모과제로 응모한 9건의 계획서에 대하여 심사·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과제로 선정 <p>【정책연구 결과물 부당 제출】 - 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 5명은 '201.30. 000 000에서 2005. 12. 발간한 '보고서 작성매뉴얼'를 표 등 내용 일부만 삭제하고 출처를 전혀 표시하지 않은 채, 본인이 직접 연구·작성한 연구 결과물인 것처럼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정책연구비 3,600천원 수령 <p>【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가이드라인】</p>	<p><①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의 - 5명 <p><②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6번에 포함조치(경고) - 4명 ○ 주의 - 1명 ○ 시정(회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정하게 지급된 정책연구비 3,600천원을 당사자들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대학명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28. 연구교수 연구결과물 미제출	<p>○ 연구년 교수로 선발된 교수 2명은 연구비 합계 16,000천원을 지급 받고 연구실적물 제출기한이 경과하였는데도 연구결과보고서 및 논문 등을 미제출</p> <p>【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2018학년도 목포해양대학교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계획】</p>	<p>○ 경고 - 2명</p> <p>○ 시정(회수) - 기지급된 연구비 합계 16,000천원을 당사자들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p>
부경대	29. 학생지도비 실적 제출 부적정	<p>【학생지도 실적과 초과근무 실적 중복】 - ①</p> <p>○ 교직원 7명은 초과근무로 학생지도가 불가함에도 동일한 시간 학생지도 실적 총 9건을 제출하여 학생지도비 합계 1,200,000원 수령</p> <p>【학생지도 실적과 출장 실적 중복】 - ②</p> <p>○ 교직원 5명은 관외출장으로 학생지도가 불가함에도 동일한 시간 학생지도 총 6건을 실적으로 제출하여 학생지도비 합계 650,000원 수령</p> <p>【학생지도 실적과 근무시간 중복】 - ③</p> <p>○ 교직원 5명은 근무시간 내 실시한 학생지도 실적 총 19건을 제출하여 학생지도비 합계 950,000원 수령</p> <p>【학생지도 실적과 강의시간 중복】 ----④</p> <p>○ 교원 17명은 강의시간과 동일(중복) 시간에 학생지도를 한 것으로 총 64건의 실적을 제출하여 학생지도비 합계 6,400,000원 수령</p> <p>【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가이드라인】</p>	<p>○ 경고 - 7명</p> <p>○ 주의 - 27명</p> <p>○ 시정(회수) - 부적정하게 지급된 학생지도비 합계 9,200천원을 당사자들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p>

대학명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30. 개인차량 입·출차 관련 학생지도 실적 인정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직원 17명이 입출차기록에 차량이 최종 출차한 것으로 기록되어 교내에 부재중이었음에도 총 21회에 걸쳐 '동절기 화재점검'을 실시하였다는 실적을 인정하여 학생지도비 합계 2,520,000원 지급 <p style="margin-top: 10px;">【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가이드라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경고 ○ 시정(회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정하게 지급된 학생지도비 합계 2,520천원을 당사자들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31. 취업률 집중관리지도 실적 인정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률 집중관리지도 프로그램 개선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학생들이 근무시간 내 취업지도를 요청한 경우에는 근무시간 내 활동실적을 학생지도비 실적으로 인정해 줌으로써, - 교직원 885명(연인원)이 근무시간 내 실시한 취업률 집중관리지도 총 885시간을 실적으로 인정하여 학생지도비 합계 132,750천원 지급 <p style="margin-top: 10px;">【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가이드라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경고 ○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의 근무시간 내 학생지도 실적을 인정하여 학생지도비가 지급되지 않도록 운영하기 바람
	32. 교육영역 지급기준 운영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영역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수립하면서 개인별 초과시수 항목에 대해 1~6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세부 지표를 설정하여 책임시수 초과분에 대해 초과강의료를 지급하고도 교육영역 실적으로 이중 인정되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교원 989명(누적인원)에게 교연비 249,550천원을 중복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교육영역 세부지표 운영 <p style="margin-top: 10px;">【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가이드라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경고 ○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대학회계법 등 관련 규정에 맞게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람

대학명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33. 제자 학위논문 관련 실적 제출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 3명은 지도제자 논문의 교신저자로 참여하여 논문집에 게재한 실적을 연구영역 연구실적으로 제출하여 교연비 합계 60,000천원 수령 <p style="text-align: center;">【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가이드라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징계 - 3명 ○ 시정(회수) - 부적정하게 지급된 교연비 합계 60,000천원을 당사자들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부산대	34. 개인차량 입·출차 관련 학생지도 실적 인정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직원 58명의 개인차량이 입출차기록 상 교내에 부재중으로 교직원들이 제출한 학생지도 실적 시간에는 학생지도가 불가함에도 총 561회에 걸친 학생지도활동 실적을 인정하여 학생지도비 합계 85,560,000원 지급 <p style="text-align: center;">【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가이드라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경고 ○ 시정(회수) - 부적정하게 지급된 학생지도비 합계 85,560,000원을 당사자들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35. 학생지도비 실적 제출 부적정	<p style="text-align: center;">【학생지도실적과 근로장학생 근무시간 중복】 - 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직원 8명은 근로장학생 9명이 근무 중으로 학생지도가 불가함에도 같은 날 동일한 시간에 중복하여 학생지도활동을 한 것으로 실적을 제출하여 학생지도비 합계 4,000,000원 수령 <p style="text-align: center;">【학생지도실적과 초과근무 실적 중복】 - 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직원 5명은 초과근무로 학생지도가 불가함에도 동일한 시간 학생지도 총 5건을 실적으로 제출하여 학생지도비 합계 2,650,000원 수령 	<p style="text-align: center;"><①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고 - 2명 ○ 주의 - 6명 ○ 시정(회수) - 부적정하게 지급된 학생지도비 합계 4,000,000원

대학명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분
		<p>【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가이드라인】</p>	<p>을 당사자들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 하기 바람</p> <p><②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명 ○ 시정(회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정하게 지급된 학생지도비 합계 2,650,000원을 당사자들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 하기 바람
	<p>36. 지도교수 상담 미실시 학생지도 실적 인정 부적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 3명은 학생 5명을 대상으로 총 11차례에 걸쳐 실제 상담을 하지 않았는데도 상담을 실시한 것으로 자체 전산시스템에 실적을 입력·제출하여 학생지도비 실적으로 인정 받은 사실이 있고, - 그 결과, 2018학년도 2학기부터 2020학년도 2학기까지 학생지도비 합계 417,360원을 부적정하게 수령 <p>【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18~'20학년도 부산대학교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명 ○ 시정(회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도교수 상담을 실시하지 않고 지급받은 학생지도비 합계 417,360원을 교수 000 등 3명으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 하기 바람

대학명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37. 학생지도영역 실적 관리 부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직원 1,378명(누적인원)이 제출한 실적보고서 총 19,726건에 대하여 실제 활동 참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 자료(증빙 사진, 비용 지출 서류 등) 없이 멘토(교직원), 멘티(학생)가 작성한 결과보고서만으로 실적 관리 <p style="text-align: center;">【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국립대학회계 예산 편성 기본지침(2018~2020학년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경고 ○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지도 활동의 실제 참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증빙 자료 등을 제출받아 실적을 철저히 관리하기 바람
	38. 기획연구과제 연구 결과 평가 미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개 기획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연구비 115,475천원을 지원하였음에도, 제출된 연구과제 결과에 대한 평가 미실시 <p style="text-align: center;">【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가이드라인, '18~'19학년도 부산대학교 기획연구과제지원사업 실시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주의 ○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연구과제로 선정되어 연구비를 지급한 연구결과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기준에 맞게 조치하기 바람
서울과학기술대	39. 학생지도비 실적 제출 부적정	<p style="text-align: center;">【학생지도실적과 출장복무 중복】 - 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직원 20명은 출장으로 학생지도가 불가함에도 대면지도·실험실점검 등 학생지도 총 43회 실적을 제출하여 학생지도비 합계 3,260,000원 수령 <p style="text-align: center;">【학생지도실적과 유연근무 중복】 - 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직원 5명은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재택근무, 시차출퇴근)로 학생지도가 불가함에도 화장실·실험실 점검 등 학생지도 총 21회 실적을 제출하여 학생지도비 합계 640,000원 수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징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명 ○ 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7명 ○ 시정(회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정하게 지급된 학생지도비 합계 6,200,000원을 당사자들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대학명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분
		<p>【학생지도실적과 근로장학생 근로시간 중복】 - ③</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직원 2명은 근로장학생들인 학생이 근무 중으로 학생지도가 불가함에도 대면지도 등 학생지도 총 5회 실적을 제출하여 학생지도비 합계 500,000원 수령 <p>【부당 실적 제출에 관한 사항】 - ④</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 1명은 학생 대면지도(지도영역 신입생 멘토링 프로그램) 명목으로 만나 같은 날 본인의 겉옷을 바꿔 입으면서 학생 3명과 여러 장의 사진을 찍고, 이를 이용해 학생 지도를 9회한 것처럼 실적을 제출하고 학생지도비 합계 1,800,000원 수령 <p>【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가이드라인】</p>	바람
	40. 징계처분자 교연비 지급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교수 1명에게 교연비 지급대상 기간에서 직위해제 기간을 제외하지 않고 교내연구비 및 연구장려금 등 교연비 합계 11,611,250원 지급 <p>【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019학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의 - 1명 ○ 시정(회수) - 과다 지급된 교내 연구비 및 연구장려금 합계 11,611,250원을 000000과 교수 000으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순천대	41. 학생지도비 실적 제출 부적정	<p>【학생지도실적과 초과근무 실적 중복】 - 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 16명은 초과근무로 학생지도가 불가함에도 학생지도 총 23건을 실적으로 제출하여 학생지도비 합계 4,470,000원 수령 <p>【학생지도실적과 출장 등 실적 중복】 - 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 37명은 관외출장 및 교육연수로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징계 - 1명 ○ 경징계 - 1명 ○ 경고

대학명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p>지도가 불가함에도 학생지도 총 56건을 실적으로 제출하여 학생지도비 합계 11,740,000원 수령</p> <p>○ 교수 및 조교 133명은 관외출장, 국외출장, 공무외국외여행으로 대면 학생상담이 불가함에도 학생 오프라인 상담 총 429건을 실적으로 제출하여 학생지도비 합계 52,693,000원 수령</p> <p>【부당 실적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 ③</p> <p>○ 교직원 2명은 주말 원거리 소재 자택 방문에 따라 실제 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휴일에 이뤄진 학생지도영역 프로그램 총 45건을 실적으로 제출하여 학생지도비 합계 13,000,000원 수령</p> <p>【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가이드라인】</p>	<p>- 30명</p> <p>○ 주의</p> <p>- 150명</p> <p>○ 시정(회수)</p> <p>- 부적정하게 지급된 학생지도비 합계 81,903천원을 당사자들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p>
	<p>42. 개인차량 입·출차 관련 학생지도 실적 인정 부적정(1)</p>	<p>○ 교직원 4명이 입출차기록 상 교내에 부재중이었음에도 총 30회에 걸쳐 동 시간에 활동하였다는 대학 재난안전환경 점검 및 상담지도 실적을 인정하여 학생지도비 합계 5,700,000원 지급</p> <p>【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가이드라인】</p>	<p>○ 기관경고</p> <p>○ 시정(회수)</p> <p>- 부적정하게 지급된 학생지도비 합계 5,700천원을 당사자들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p>
	<p>43. 학생지도비 실적 제출 부당</p>	<p>○ ‘대학 재난안전환경 및 학생상담지도’ 등 3개 학생지도 프로그램 참여 교직원 176명은 실적제출 예정일 중 일부만 실제로 모임을 소집하거나 주말 실적임에도 평일 근무시간 등에 잠시 모임을 소집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프로그램(또는 프로그램내 조)별로 공유한 후, 참여자들이 모인 시점에 실적이 이뤄지지 않은 날의 실적자료 작성을 위한 서명부 작성 및 사진 촬영을 한꺼번에 실시하여 허위 실적 자료를 작성하는 방식</p>	<p>○ 중징계</p> <p>- 11명</p> <p>○ 경징계</p> <p>- 19명</p> <p>○ 경고</p> <p>- 72명</p>

대학명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p>으로 학생지도영역 총 1,888건을 실적으로 제출하여 학생지도비 합계 403,210,000원 부당 수령</p> <p>【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18~'20학년도 국립대학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4.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관련 가이드라인】</p>	<p>○ 주의 - 74명</p> <p>○ 시정(회수) - 부당하게 지급된 학생지도비 합계 403,210,000원을 당사자들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p>
	44. 개인차량 입·출차 관련 학생지도 실적 인정 부적정(2)	<p>○ 교직원 113명의 개인차량이 입·출차기록상 교내에 부재중으로 교직원들이 제출한 학생지도 실적 시간에는 학생지도가 불가함에도 총 2,558회에 걸친 학생지도 실적을 인정하여 학생지도비 합계 491,170,000원 지급</p> <p>【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가이드라인】</p>	<p>○ 기관경고</p> <p>○ 시정(회수) - 부적정하게 지급된 학생지도비 합계 491,170,000원을 당사자들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p>
안동대	45. 학생지도비 지급 시스템 부실 운영 및 실적관리 미흡	<p>○ 교원의 학생지도 실적을 입력하는 취업창업 진로본부(MSP)시스템에 실제 학생지도 시간을 입력하지 않고, 시스템에 학생지도 하였다는 제목과 내용만 입력 하면 실적으로 인정하도록 설계하여 복무(출장, 초과근무) 및 강의 시간 등과 중복 여부 등을 검증할 수 없도록 운용</p> <p>○ 교원 315명이 실시한 학생지도 41,612건 (83,224점)의 실적을 객관적 증빙자료(사진, 영수증 등) 없이 시스템에 입력한 학생상담 내용만으로 인정하여 학생지도비 지급</p> <p>○ 교원 187명이 실시한 상담실적 7,480건 (14,960점)에 대하여 상담시간을 미입력하거나 상담시간이 5분 미만인데도 학생지도 실적</p>	<p>○ 기관경고</p> <p>○ 주의 - 6명</p> <p>○ 통보 - 교원의 학생지도 수행 실적을 구체적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학생지도 실적 입력시스템 개선 및 학생지도 인정</p>

대학명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p>으로 인정하고 학생지도비 지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 90명이 실시한 학생지도 810건(1,620점, 81,000,000원)의 상담실적을 시스템에 제목만 입력하고 상담 내용은 미입력하였거나 50자 미만의 상담 실적을 입력하였는데도 학생 지도 실적으로 인정 <p>【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가이드라인】</p>	<p>기준을 상위 규정에 맞도록 지급 기준을 정비하기 바람</p>
	46. 학생지도비 실적 제출 부적정	<p>【학생지도 실적과 초과근무 실적 중복】 - 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 7명은 초과근무로 학생지도가 불가함에도 학생지도 총 9건을 실적으로 제출하여 학생지도비 합계 875,670원 수령 <p>【학생지도 실적과 출장시간 중복】 - 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직원 12명은 출장으로 학생지도가 불가함에도 학생지도 총 16건을 실적으로 제출하여 학생지도비 합계 1,947,000원 수령 <p>【학생지도 실적과 복무(연가 등) 실적 중복】 - ③</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 42명은 연가(조퇴) 등으로 학생지도가 불가함에도 학생지도 총 91건을 실적으로 제출하여 학생지도비 합계 9,964,190원 수령 <p>【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가이드라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고 - 6명 ○ 주의 - 40명 ○ 시정(회수) - 부적정하게 지급된 학생지도비 12,786,860원을 당사자들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47. 연구영역 동일 실적물 중복 제출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 6명은 기본연구 실적으로 인정받은 실적을 선택영역 실적으로도 제출하거나, 연도를 달리하여 동일 실적을 제출하여 교연비 합계 4,000,000원 중복 수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고 - 2명 ○ 주의 - 4명 ○ 시정(회수) - 부적정하게 지급된 교연비

대학명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분
		<p>【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가이드라인, 2018~2020년 안동대학교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계획】</p>	<p>합계 4,000,000원을 당사자들로 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p>
전남대	48. 학생지도비 실적 제출 부적정	<p>【학생지도실적과 초과근무 실적 중복】 - 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 25명은 초과근무로 학생지도가 불가함에도 학생지도 총 32건을 실적으로 제출하여 학생지도 실적 363점을 인정받고 학생지도비 합계 7,260,000원 수령 <p>【학생지도 실적과 출장 등 실적 중복】 - 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 5명은 관외출장으로 학생지도가 불가함에도 학생지도 실적 6건을 제출하여 학생지도비 1,060,000원 수령 <p>【학생지도 실적과 근무상황(연가 등) 실적 중복】 - ③</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 7명은 연가 등으로 학생지도가 불가함에도 학생지도 실적 9건을 제출하여 학생지도 실적 90점을 인정받고 학생지도비 1,800,000원 수령 <p>【학생지도 동일시간대 실적 중복 제출】 - ④</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직원 21명은 동일 시간대에 수행한 학생지도 실적 총 37건을 제출하여 학생지도 실적 322점을 인정받고 학생지도비 합계 6,440,000원 수령 <p>【학생지도 실적과 근로학생 근무시간 중복】 - 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직원 13명은 근로학생의 근무로 학생지도가 불가함에도 동일한 시간 수행한 학생지도 실적 20건을 제출하여 학생지도 80점을 인정받고 1,600,000원 수령 <p>【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가이드라인】</p>	<p>○ 경고 - 1명</p> <p>○ 주의 - 74명</p> <p>○ 시정(회수) - 부적정하게 지급된 학생지도비 합계 18,160천원을 당사자들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p>

대학명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49. 학생지도 실적 인정 부적정	<p>【학생지도실적 1일 인정기준 초과】 - 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직원 70명에 대해 1일 학생지도 실적 한도인 20점을 초과한 944점을 인정하고 학생지도비 합계 18,880,000원 과다 지급 <p>【1일 이상 출장일 등 학생지도 실적 인정】 - 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 8명이 출장일에 실시한 학생지도 62건 (345점)의 실적을 인정하고 학생지도비 합계 6,900,000원 지급 ○ 교직원 8명이 연가 등의 복무일에 실시한 학생지도 20건(78점)의 실적을 인정하고 학생지도비 합계 1,560,000원 지급 <p>【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가이드라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고 - 7명 ○ 시정(회수) - 학생지도 인정기준과 달리 실적을 인정하고 지급한 학생지도비 합계 27,340천원을 당사자들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50. 연구영역 동일 실적물 중복 제출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 2명은 동일 연구과제 결과물을 연도를 달리하여 제출하거나 동일연도 내 연구영역 타 세부지표 실적으로 제출하여 교연비 합계 19,050천원 수령 <p>【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가이드라인, '18~'20학년도 전남대학교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지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징계 - 1명 ○ 경고 - 1명 ○ 시정(회수) - 부적정하게 지급된 교연비 합계 19,050천원을 당사자들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전북대	51. 학생지도비 실적 제출 부적정	<p>【근무시간 내 학생지도 관련】 - 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 교직원 30명이 실시한 근무시간 중 상담내용 등 총 463건을 학생지도 실적으로 인정하여 2018학년도 학생지도비 합계 62,615,580원 지급 	<p><①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경고 <p><①, ②, ③, ④, ⑤, ⑥ 관련></p>

대학명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p>○ 나. 교직원 25명은 근무시간 내 상담내용 등 학생지도 총 351건을 실적으로 제출하여 2019-2020학년도 학생지도비 합계 54,290,000원 수령</p> <p>【학생지도실적과 출장 중복 관련】 - ②</p> <p>○ 교직원 19명은 출장으로 학생지도가 불가함에도 같은 날 동일(중복) 시간에 총 22회의 학생지도를 실시한 것으로 실적을 제출하여 학생지도비 합계 3,485,000원 수령</p> <p>【학생지도실적과 초과근무 중복 관련】 - ③</p> <p>○ 직원 33명은 초과근무 중으로 학생지도가 불가함에도 같은 날 동일(중복) 시간에 총 58회의 학생지도를 실시한 것으로 실적을 제출하여 학생지도비 합계 11,860,000원 수령</p> <p>【학생지도실적과 근무상황(복무) 중복 관련】 - ④</p> <p>○ 교직원 82명은 조퇴 등을 사용한 후 학생 지도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총 151회의 학생지도를 한 것으로 실적을 제출하여 학생 지도비 합계 37,712,060원 수령</p> <p>【학생지도 실적과 근로장학생 근로시간 중복 관련】 - ⑤</p> <p>○ 교직원 28명은 근로장학생인 총 34명의 학생이 근무 중으로 학생지도가 불가함에도 같은 날 동일(중복)한 시간에 학생지도 총 61회를 실시한 것으로 실적을 제출하여 학생지도비 합계 9,088,230원 수령</p> <p>【학생지도 허위실적 제출 관련】 - ⑥</p> <p>○ 교직원 16명은 대상 학생이 다른 교직원과 상담 중이거나, 수업을 받는 중이거나, 학생 지도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 하는 등 실제 학생지도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학생지도 총 38회를 실시한 것으로 실적을 제출하여 학생지도비 합계 11,153,410원 수령</p> <p>【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p>	<p>○ 중징계 - 4명</p> <p>○ 경징계 - 2명</p> <p>○ 경고 - 15명</p> <p>○ 주의 - 147명</p> <p>○ 시정(회수) - 부적정하게 지급된 연번 ①나, ②, ③, ④, ⑤, ⑥ 관련 학생지도비 합계 127,588,700원을 당사자들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 하기 바람</p>

대학명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52. 교육영역 교연비 지급 부적정	<p>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가이드라인, 전북대학교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용 지급기준]</p> <p>○ 2018학년도 초과강의 실적으로 초과강의료를 지급하고도 교원 3명에게 초과강의를 교연비 실적으로 인정하여 교연비 합계 3,000천원 중복 지급</p> <p>【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가이드라인, 2018~2019년 전북대학교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용 지급기준】</p>	<p>○ 기관경고</p> <p>○ 시정(회수)</p> <p>- 교원 3명에게 초과강의료와 중복 지급한 2018학년도 교연비(교육영역) 중복 지급액 총 3,000천원을 당사자들로부터 각각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p>
	53. 제자 학위논문 관련 실적 제출 부적정	<p>○ 교원 7명은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요약한 연구결과보고서를 교연비 연구영역 실적으로 제출하여 교연비 합계 66,500천원 수령</p> <p>【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가이드라인, 전북대학교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용 지급기준】</p>	<p>○ 경징계</p> <p>- 7명</p> <p>○ 시정(회수)</p> <p>- 부적정하게 지급된 교연비 합계 66,500천원을 당사자들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p>
제주대	54. 학생지도비 실적 제출 부적정	<p>【학생지도 실적과 출장 중복】 - ①</p> <p>○ 교직원 16명은 2018. 4월부터 2020. 12월 까지 출장으로 학생지도가 불가함에도 동일한 시간에 총 69건의 학생지도실적을 제출하여 학생지도비용 합계 6,900,000원 수령</p> <p>【부당 실적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 ②</p> <p>○ 교직원 4명은 2020. 6.부터 2020. 9.까지 실제 학생지도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총 8건의 학생지도 실적을 제출하여 학생지도비 합계</p>	<p>○ 경징계</p> <p>- 2명</p> <p>○ 경고</p> <p>- 10명</p> <p>○ 주의</p> <p>- 38명</p> <p>○ 시정(회수)</p>

대학명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분
		<p>800,000원 수령</p> <p>【초과근무 시간과 학생지도 실적 중복】 - ③</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 4명은 초과근무로 학생지도가 불가함에도 총 4건을 실적으로 제출하여 학생지도비 합계 500,000원 수령 <p>【동일 시간대 학생지도 실적 중복】 - ④</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 4명은 2018. 4.부터 2018. 6.까지 동일 (중복) 시간대 학생지도 실적 총 4건을 제출하여 학생지도비 합계 500,000원 중복 수령 ○ 직원 8명은 동일 시간대 다른 장소에서 다른 멘토링팀과 상담중이어서 멘토링 활동이 불가한 학생에게 총 4건의 멘토링 활동을 실시한 것처럼 실적을 제출하여 학생지도비 합계 1,600,000원 수령 <p>【학생지도 실적과 근무상황(공가 등) 중복】 - 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직원 10명은 공가, 연가, 당직휴무, 재택 근무 등으로 학생지도가 불가함에도 총 17건의 실적을 제출하여 학생지도비 합계 1,700,000원 수령 <p>【근무시간 내 학생지도 실적 제출】 - 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교 4명은 2018. 3.부터 2020. 12.까지 근무 시간 내에 학생과의 상담활동내역 총 106건을 실적으로 제출하여 학생지도비 합계 10,350,000원 수령 <p>【학생지도실적과 근로장학생 근로시간 중복】 - ⑦</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교 2명은 멘티 학생이 근로장학생으로 근무하고 있어 학생지도가 불가함에도 총 7건의 실적을 제출하여 학생지도비 합계 700,000원 수령 <p>【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교육·</p>	<p>- 부적정하게 지급된 학생지도비 합계 23,050,000원을 당사자들로 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p>

대학명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분
		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가이드라인 '18~'20 학년도 제주대학교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등 지급계획】	
	55. 개인차량 입·출차 관련 학생지도 실적 인정 부적정	○ 교직원 112명은 입출차기록 상 교내에 부재중 이었음에도 출차이후 총 648회에 걸쳐 학생 지도 활동을 하였다고 제출한 실적을 인정 하여 학생지도비 합계 83,500,000원 지급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교육· 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가이드라인 '18~'20 학년도 제주대학교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등 지급계획】	○ 기관경고 ○ 시정(회수) - 부적정하게 지급 된 학생지도비 합계 83,500,000원 을 당사자들로 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56. 연구영역 연구결과보고서 실적 관리 부적정	○ 교수 7명이 제출한 연구결과보고서 분량이 실적기준인 5페이지 이상에 미치지 못함 에도 연구실적으로 인정하여 연구영역 실적금 합계 28,520천원 지급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19~'20 학년도 제주대학교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등 지급계획】	○ 기관경고 ○ 통보 - 교육·연구 및 학 생지도비 지급 기준에 따라 심 사를 철저히 하 기 바람
창원대	57. 학생지도비 실적 제출 부적정	【학생지도 실적과 초과근무 실적 중복】 - ① ○ 교직원 3명은 초과근무로 학생지도가 불가 함에도 학생지도 총 5건을 실적으로 제출 하여 학생지도비 합계 750,000원 수령 【학생지도 실적과 근무상황(복무)과 중복】 - ② ○ 교직원 10명은 특별휴가, 병가의 사유로 학생 지도가 불가함에도 학생지도 총 11건을 실적 으로 제출하여 학생지도비 1,650,000원 수령 【근로학생 근로시간 중 학생지도 실적】 - ③ ○ 교직원 2명은 근로장학생으로 근무하고 있어 학생지도가 불가함에도 같은 날 동일(중복)한 시간 학생지도 총 3건을 실적으로 제출하여 학생지도비 합계 450,000원 수령	○ 주의 - 15명 ○ 시정(회수) - 부적정하게 지급 된 학생지도비 합계 3,150천원을 당사자들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 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대학명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분
		<p>【동시간대 학생지도 중복】 - ④</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직원 2명은 000 학생 등 2명에 대한 학생 지도 실적 2건이 000 교수 등 다른 교직원 2명과 같은 날 동일 시간대로 중복되어 학생 지도가 불가함에도 학생지도 총 2건을 실적으로 제출하여 합계 300,000원 수령 <p>【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18~'20학년도 창원대학교 교육 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계획】</p>	
충남대	58. 학생지도비 실적 제출 부적정	<p>【학생지도 실적과 초과근무 실적 중복】 - 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직원 18명은 초과근무로 학생지도가 불가함에도 동일한 시간 학생지도 총 24건을 실적으로 제출하여 학생지도비 합계 5,973,000원 수령 <p>【학생지도 실적과 출장 등 실적 중복】 - 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직원 70명은 출장, 연수 및 공무외국의 여행으로 학생지도가 불가함에도 동일(중복)한 시간 학생지도 총 97건의 실적을 제출하여 학생지도비 합계 26,895,000원 수령 <p>【학생지도 실적과 근무상황(연가 등) 실적 중복】 - ③</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직원 21명은 연가, 공가, 재택근무 등의 사유로 학생지도가 불가함에도 학생지도 총 26건을 실적으로 제출하여 학생지도비 합계 6,732,000원 수령 <p>【부당 실적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④</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직원 4명은 학생 멘토링(GPS), 동아리지도 등 2020학년도 학생지도영역 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실제 활동을 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운영한 학생지도 실적을 제출하여 허위 실적 총 52회에 대한 학생지도비 합계 14,916,000원 수령 <p>【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교육 연구 및 학생지도 비육 지급 가이드라인, '18~'20학년도 충남대학교 교육 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징계 - 1명 ○ 경고 - 5명 ○ 주의 - 95명 ○ 시정(회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정하게 지급된 학생지도비 합계 54,516천 원을 당사자들로 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대학명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분
	59. 개인차량 입·출차 관련 학생지도 실적 인정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직원 29명이 입출차기록 상 교내에 부재 중이었음에도 총 214회에 걸쳐 동 시간에 활동하였다는 교내학생생활지도, 학생멘토링(GPS) 및 동아리지도 실적을 인정하여 학생 지도비 합계 43,659,000원 지급 <p>【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가이드라인, '18~'20학년도 충남대학교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경고 ○ 시정(회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정하게 지급된 학생지도비 합계 43,659천원을 당시자들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 조치하기 바람
	60. 학생지도영역 실적물 증빙자료 관리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지도영역 학생 멘토·멘티, 동아리 지도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으면서 각종 증빙자료 별첨 여부 확인과 학생 멘토·멘티 프로그램 일지에 참여자 확인 날인 없이 운영 <p>【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18~'20학년도 충남대학교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경고 ○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연비 지급 실적 증빙자료를 통해 실적 허위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관리하기 바람
	61. 교내 학생활동 지도 실적 인정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직원 4명이 2018. 6. 1.에 실시한 초중고등학교 학생 ○○○○대회 관련 교내 학생 활동지도 실적을 인정하여 총 13점을 부여하고 학생지도비 합계 858천원 지급 <p>【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가이드라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주의 ○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연비 지급 시 유초중고 학생 대상 행사 지도 실적은 인정되지 않도록 운영하기 바람
	62. 징계처분 기간 학생 지도 실적 인정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교 1명이 징계(정직 3월) 처분기간 중인 2020. 10. 12. 12:00~13:00에 학생 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생 멘토·멘티(GPS)활동을 교연비(학생지도) 실적으로 인정(5점)하였으며, 2020학년도 학생지도비 산정시 징계처분기간 3개월을 반영하지 않아 1,650천원 과다 지급 <p>【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충남대학교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명 ○ 시정(회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다 지급된 교연비 1,650천원을 ○○○으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 조치하기 바람

대학명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분
	63. 제자 학위논문 관련 실적 제출 부적정	<p>○ 교수 5명은 논문지도 제자 학위논문을 요약하여 같은 제목으로 학술지에 게재하거나 지도 제자 학위논문과 동일한 내용으로 연구결과보고서를 교연비 연구영역 실적으로 제출하여 교연비 총 18,643,045원 수령</p> <p>【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가이드라인】</p>	<p>○ 경징계 - 2명</p> <p>○ 주의 - 3명</p> <p>○ 시정(회수) - 부적정하게 지급된 교연비 합계 18,643,045원을 당사자들로 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p> <p>○ 통보 -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기준에 따라 심사를 철저히 하기 바람</p>
	64. 연구영역 동일 실적물(논문) 중복 제출 부적정	<p>○ 교수 36명은 이미 실적물을 제출하여 인정받고 교연비를 지급받은 동일한 연구 실적물을 연도를 달리하여 중복 제출함으로써 교연비 합계 19,775,334원 중복 수령</p> <p>【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충남대학교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계획】</p>	<p>○ 경고 - 9명</p> <p>○ 주의 - 26명</p> <p>○ 61번에 포함조치 - 1명</p> <p>○ 시정(회수) - 중복 지급된 교연비 합계 19,775,334원을 000 등 관련자 36명으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p>

대학명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65. 연구영역 동일 실적물 중복 제출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 1명은 동일한 제목과 내용으로 2개 이상의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연구결과물을 2019. 2. 9. 2018학년도 연구영역 실적으로 중복 제출하여 교연비 330,000원 수령 <p>【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가이드라인, 충남대학교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의 - 1명 ○ 시정(회수) - 중복 지급된 교연비 합계 330,000원을 0000과 조교수 000으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 하기 바람
충북대	66. 외국인유학생 멘토링 필수 교육 미이수자 교연비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 3명이 유학생 멘토링 실적 관련 요건인 외국어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음에도 학생 지도비 합계 900,000원 지급 <p>【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18~'20학년도 충북대학교 대학회계 교육·연구 및 학생 지도 비용 지급계획, '18~'20학년도 충북대학교 유학생 멘토링 운영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의 - 3명
	67. 학생지도비 실적 제출 부적정	<p>【근무시간과 학생지도 중복】 - 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 29명은 근무시간 내에 실시한 학생 지도 총 70건을 실적으로 제출하여 학생 지도비 합계 7,000천원 수령 <p>【학생지도실적과 초과근무 실적 중복】 - 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직원 67명은 초과근무로 학생지도가 불가함에도 총 104건을 실적으로 제출하여 학생 지도비 합계 42,000천원 수령 <p>【학생지도실적과 출장·복무 중복 등】 - ③</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직원 23명은 출장 등으로 학생지도가 불가함에도 총 28건을 실적으로 제출하여 학생 지도비 합계 2,800천원 수령 <p>【동일시간 대 학생지도 실적 중복】 - ④</p>	<p><①~③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고 - 4명 ○ 주의 - 136명 ○ 시정(회수) - 부적정하게 지급된 학생지도비 합계 55,500,000원을 당사자들로 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 하기 바람

대학명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직원 26명이 같은 날, 동일 시간 대(일부 중첩 포함)에 실시한 학생지도 실적 총 35건을 중복으로 인정하여 각각 실적에 대한 학생 지도비 합계 3,700천원을 중복하여 지급하였고, 해당 교직원들은 자신의 학생지도실적을 확인 하지 않고 제출하여 학생지도비 합계 3,700 천원 중복 수령 <p>【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가이드라인, '18~'20학년도 충북대학교 대학회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계획】</p>	<p><④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경고 ○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지도실적이 중복으로 지급 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68. 교육영역 지표 설계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법연수 지표를 설계하여 단순참여 실적을 인정하도록 「충북대학교 '18 ~ '20학년도 대학회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p>【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가이드라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경고
	69. 기 연구과제 결과물 교연비 실적 제출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 1명은 2018년 교내 연구비 충북대학교 국립대학육성사업에서 지원을 받은 논문을 2019년 우수 연구실적으로 제출하여 교연비 3,525,520원 수령 <p>【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충북대학교 '18~'20학년도 대학회계 교육·연구 및 학생 지도 비용 지급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명 ○ 시정(회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내 연구비를 지원받고 동 실적을 우수연구 실적으로 제출하여 지급받은 교연비 3,525,520 원을 000000 과 교수 000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 조치하기 바람
	70. 근무기간 월할계산 미적용 교연비 지급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 50명이 실제 근무한 근무기간을 월할 계산하여 연구영역 비용을 산정하지 않고 전부 지급하여 합계 138,374,210원의 교연비 과다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경고 ○ 시정(회수)

대학명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p>【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가이드라인, 충북대학교 '18~'20학년도 대학회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계획】</p>	<p>- 부적정하게 지급된 교연비 합계 138,374,210원을 관련자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p>
	71. 제자 학위논문 관련 실적 제출 부적정	<p>○ 교수 16명은 제자 등(심사학생 포함) 학위논문을 요약한 공동저자 논문을 우수연구실적으로 제출하여 인정받고 교연비 합계 53,639,580원 수령</p> <p>【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가이드라인】</p>	<p>○ 경고 - 12명</p> <p>○ 주의 - 4명</p> <p>○ 시정(회수) - 부적정하게 지급된 교연비 합계 53,639,580원을 당사자들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p>
한경대	72. 학생지도비 실적 제출 부적정	<p>【학생지도 실적과 출장 중복】 - ①</p> <p>○ 교직원 39명은 출장 등으로 학생지도가 불가함에도 동일한 시간 학생지도 총 69건을 실적으로 제출하여 학생지도비 합계 8,948,190원 수령</p> <p>【학생지도 실적과 초과근무 실적 중복】 - ②</p> <p>○ 직원 13명은 초과근무로 학생지도가 불가함에도 동일한 시간 학생지도 총 26건을 실적으로 제출하여 학생지도비 합계 2,780,000원 수령</p> <p>【학생지도 실적과 근무상환(연가 등) 실적 중복】 - ③</p> <p>○ 조교 1명은 2018. 9. 7. 09:00부터 18:00까지 연가를 사용하여 학생상담이 불가함에도 같은 날 12:00부터 13:00까지 대학생 멘토링 실적 4건을 제출하여 학생지도비 140,000원 수령</p>	<p>○ 경고 - 3명</p> <p>○ 주의 - 48명</p> <p>○ 시정(회수) - 부적정하게 지급된 학생지도비 합계 11,868,190원을 당사자들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p>

대학명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분
		<p>【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가이드라인】</p>	
	<p>73. 교육·연구비용 지급 심사위원회 구성 부적정</p>	<p>○ 2018학년도부터 2021학년도까지 교육·연구비용지급 심사위원회 위원 총 48명을 모두 교수만으로 구성하여 운영</p> <p>【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가이드라인】</p>	<p>○ 기관주의</p> <p>○ 통보</p> <p>- 교육·연구비용 지급심사위원회 구성 시 교원 직위 조교 등 모든 직종이 참여하도록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기 바람</p>
	<p>74. 제자 학위논문 관련 실적 제출 부적정</p>	<p>○ 교원 3명은 지도학생의 석·박사 학위논문을 요약한 연구결과보고서를 실적으로 제출하고 교육연구비 합계 13,200천원 수령</p> <p>【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가이드라인】</p>	<p>○ 경고</p> <p>- 3명</p> <p>○ 시정(회수)</p> <p>- 부적정하게 지급된 교연비 합계 13,200천원을 당사자들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p>
<p>한국 교원대</p>	<p>75. 학생지도비 실적 제출 부적정</p>	<p>【학생지도 실적과 초과근무 실적 중복】 - ①</p> <p>○ 교직원 27명은 초과근무 중으로 학생지도가 불가함에도 학생지도 실적 총 28건을 제출하여 학생지도비 합계 8,820,000원 수령</p> <p>【학생지도 실적과 출장시간 중복】 - ②</p> <p>○ 교직원 2명은 출장으로 학생지도가 불가함에도 학생지도 총 2건을 실적으로 제출하여 학생지도비 합계 720,000원 수령</p>	<p>○ 주의</p> <p>- 29명</p> <p>○ 시정(회수)</p> <p>- 부적정하게 지급된 학생지도비 합계 9,540,000원을 당사자들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p>

대학명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분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가이드라인, 한국교원대학교 2018~2020학년도 교직원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계획】	
	76. 학생지도 프로그램 운영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어회화 등 100개 강좌(중복포함, 1~2시간 총 수강 인원 1,654명)를 총 168시간을 운영하면서 직원 611명(중복포함)을 ‘수업준비 등 지원’을 사유로 배치하고 지원 활동을 학생지도 실적으로 인정하여 학생지도비 합계 61,800,000원 지급 <p>【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가이드라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경고 ○ 통보 - 학생지도 프로그램 운영시 참여인원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바람
	77. 연구영역 선급금 미환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 1명이 2018. 6. 7. 연구과제 ‘○○○○에 관한 연구 동향 연구’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한 후 선급금을 지급 받고 2019. 1. 31. 까지 제출해야 할 연구실적물을 2021. 6. 감사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계획서 제출 시 지급한 선급금(600,000원) 미회수 <p>※ 교수가 취합담당자에게 결과보고서를 전달하였으나, 결과처리 미반영</p> <p>【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가이드라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의 - 1명
한국 교통대	78. 교연비 예산편성·집행 현황 공개 지연 및 지급 계획 미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회계 결산서 공개일로부터 짧게는 11일에서 길게는 191일 지연하여 교연비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공개 - 2021. 7. 감사일 현재까지 2018~2020학년도 교연비 지급 계획 미공개 <p>【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주의 ○ 통보 - 교연비 지급 계획, 예산 편성 및 집행현황 공개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 바람
	79. 근무시간 내 학생지도 실적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무시간 내 임장지도, 동아리지도, 현장 실습지도 등 학생지도 실적 총 2,193건에 대해 학생지도비 합계 188,550천원을 지급하게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경고 ○ 통보

대학명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p>【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가이드라인】</p>	<p>- 향후 학생지도 비용 지급 계획 수립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 바람</p>
	<p>80. 학생지도비 실적 제출 부적정</p>	<p>【초과근무 실적과 학생지도 실적 중복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 3명은 초과근무로 학생지도가 불가함에도 입장지도 등 학생지도 실적 총 6건을 제출하여 학생지도비 합계 600,000원 수령 <p>【출장과 학생지도 실적 중복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직원 23명은 출장으로 학생지도가 불가함에도 학생지도 총 44건을 실적으로 제출하여 학생지도비 합계 3,580,000원 수령 <p>【근무상황(연가 등)과 학생지도 실적 중복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직원 31명은 연가 등으로 학생지도가 불가함에도 학생지도 총 40건을 실적으로 제출하여 학생지도비 합계 3,200,000원 수령 <p>【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가이드라인, 2018~2020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용 지급 계획(한국교통대학교)】</p>	<p>○ 경고 - 1명</p> <p>○ 주의 - 50명</p> <p>○ 시정(회수) - 부적정하게 지급된 학생지도비 합계 7,380천원을 당사자들로 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p>
	<p>81. 부실 학생상담 실적 인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 657명(중복 포함)이 예비군훈련, 학사일정 등 공지사항을 학생에게 안내한 실적 합계 35,888건을 학생상담지도 실적으로 인정하여 학생지도비 지급 <p>【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가이드라인】</p>	<p>○ 기관경고</p> <p>○ 통보 - 향후 학생상담 운영 시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기 바람</p>
	<p>82. 교육영역 실적기준 미충족자 교연비 지급 부적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학년도 1학기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연구 교수 및 해외파견 교수 등 9명에게 1학기 공통항목 준비비용 명목으로 교연비 합계 	<p>○ 경고 - 7명</p>

대학명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분
		<p>15,840,000원 지급</p> <p>○ 강의자료 공개 지표 실적에 대한 교연비 지급 시 학기개시 전까지 강의계획서 입력 여부 확인을 소홀히 하여 기한 내 강의계획서를 미입력한 교수 24명에게 교연비 15,486,240원 과다 지급</p> <p>【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한국교통대학교 교육연구학생지도 비용 지급에 관한 지침, 2018~2020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용 지급 계획 (한국교통대학교)】</p>	<p>○ 시정(회수)</p> <p>- 부적정하게 지급된 교연비 합계 31,326,240원을 당사자들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 하기 바람</p>
한국방 송통신 대	83. 교육·연구 학생지도비 예산 과다 편성	<p>○ 2018학년도 및 2020학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 계획을 수립하면서 총 2회 전년도 결산액 보다 158,780천원 과다하게 예산 편성</p> <p>【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p>	<p>○ 기관경고</p> <p>○ 주의</p> <p>- 7명</p> <p>○ 통보</p> <p>- 교육·연구 학생지도비 예산을 관련 규정 및 기준에 맞게 편성하기 바람</p>
	84. 학생지도비 실적 인정 기준 및 관리 미흡	<p>○ 교직원 916명이 실적으로 제출한 통상 업무 (단순학사 안내, 수업질문 답변 등), 객관적 증빙 없는 상담, 게시판 답변이나 이메일 발송 사실만으로 총 117,030건을 실적으로 인정</p> <p>【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가이드라인】</p>	<p>○ 기관주의</p> <p>○ 통보</p> <p>- 학생지도 인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지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학생지도비 지급 기준을 마련하기 바람</p>

대학명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분
	85. 학생지도비 실적 제출 부적정	<p>【학생지도 실적과 초과근무 실적 중복】 - 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 10명은 초과근무로 학생지도가 불가함에도 학생지도 총 11건을 실적으로 제출하여 학생지도비 합계 2,325,000원 수령 <p>【학생지도 실적과 출장 시간 중복】 - 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 2명이 출장(연수)으로 학생지도가 불가함에도 학생지도 총 3건의 실적을 제출하여 학생지도비 합계 600,000원 수령 <p>【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가이드라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18~'20학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의 - 11명 ○ 시정(회수) - 부적정하게 지급된 학생지도비 합계 2,925,000원을 당사자들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86. 학생지도비(학생활동 지원활동) 실적 초과 인정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직원 37명에 대해 학생지도 실적한도인 1,375점을 453점 초과한 1,799점을 인정하여 학생지도비 22,500,000원을 초과 지급 <p>【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가이드라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18~'20학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경고 ○ 주의 - 6명 ○ 시정(회수) - 학생지도 인정 기준 초과 실적(453점), 과오지급한 학생지도비 22,500,000원을 관련 자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로 세입조치하기 바람
	87. 제자 학위논문 관련 실적 제출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 7명(8건)은 논문지도 제자 학위논문과 동일한 내용의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거나 제자 학위논문 내용을 요약하여 같은 제목으로 학술지에 게재한 실적을 교연비 연구영역 실적으로 제출하여 교연비 합계 17,800천원 수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6번에 포함조치 - 1명 ○ 경고 - 3명 ○ 주의

대학명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분
		<p>【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18~'20학년도 국립대학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가이드라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18~'20학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계획】</p>	<p>- 3명</p> <p>○ 시정(회수)</p> <p>- 부적정하게 지급된 연구영역 교연비 합계 17,800천원을 당사자들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p>
	88. 연구영역 동일 실적물 중복 제출 부적정	<p>○ 교수 2명은 연구실적으로 기 인정받은 논문을 동일 회계내 타 영역 또는 다른 회계연도의 실적으로 중복 제출하여 교연비 합계 8,300천원 중복 수령</p> <p>【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계획】</p>	<p>○ 경징계</p> <p>- 2명</p> <p>○ 시정(회수)</p> <p>- 부적정하게 지급된 교연비 합계 8,300천원을 당사자들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p>
한국 체육대	89. 학생지도비 실적 제출 부적정	<p>【학생지도 실적과 초과근무 실적 중복】 - ①</p> <p>○ 교직원 11명은 초과근무로 학생지도가 불가함에도 학생지도 총 14건을 실적으로 제출하여 학생지도비 합계 1,318,130원 수령</p> <p>【학생지도 실적과 출장실적 중복】 - ②</p> <p>○ 교직원 4명은 출장으로 학생지도가 불가함에도 학생지도 총 5건을 실적으로 제출하여 학생지도비 합계 473,120원 수령</p> <p>【학생지도 실적과 복무(연가 등) 실적 중복】 - ③</p> <p>○ 교직원 17명은 연가 등으로 학생지도가 불가함에도 학생지도 총 35건을 실적으로 제출하여 학생지도비 합계 3,313,040원 수령</p>	<p>○ 경고</p> <p>- 6명</p> <p>○ 주의</p> <p>- 38명</p> <p>○ 시정(회수)</p> <p>- 부적정하게 지급된 학생지도비 합계 13,479,440원을 당사자들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p>

대학명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분
		<p>【학생지도 실적과 근로장학생 근로시간내 중복】 - ④</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직원 6명은 멘티 대상 학생이 근로장학생으로 근무하고 있어 학생지도가 불가함에도 학생지도 총 7건의 실적을 제출하여 학생지도비 합계 676,780원 수령 <p>【학생지도 실적과 근무시간내 중복】 - 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 10명은 근무시간 내 학생지도 실적 총 79건을 제출하여 학생지도비 합계 7,698,370원 수령 <p>【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가이드라인, '18~'20학년도 한국체육대학교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계획】</p>	
	90. 개인차량 입·출차 관련 학생지도 실적 인정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직원 25명은 입출차기록 상 교내에 부재중으로 학생지도가 불가함에도 학생지도 총 161건의 실적을 인정하여 학생지도비 합계 15,120,950원 지급 <p>【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가이드라인, '18~'20학년도 한국체육대학교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경고 ○ 시정(회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정하게 지급된 학생지도비 합계 15,120,950원을 당사자들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91. 학생지도비 증빙 문서 보존·관리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직원 57명(516건)의 2018학년도 학생지도 영역 중 대학적응 멘토링 관련 지출 증빙 자료를 보관하지 않아 지급근거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함 <p>【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5조, 한국체육대학교 기록관리기준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명
	92. 교육영역 실적 인정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 24명이 교육영역 강의개선보고서 또는 훈련개선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강의평가 결과를 토대로 교연비 차등급 합계 9,808,080원 지급 ○ 교수 1명은 3개년 동안 동일한 강의개선 보고서를 작성·제출하고 교연비 차등급 합계 1,081,360원 수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경고 ○ 경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명

대학명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분
	93. 제자 학위논문 관련 실적 제출 부적정	<p>【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18~'20학년도 한국체육대학교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계획】</p> <p>○ 교수 10명은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고 이를 연구영역 실적으로 제출하여 교연비 합계 30,150,420원 수령</p> <p>【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18~'20학년도 국립대학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가이드라인】</p>	<p>○ 시정(회수)</p> <p>- 부적정하게 지급된 교연비 합계 10,889,440원을 당사자들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 하기 바람</p> <p>○ 경징계</p> <p>- 1명</p> <p>○ 경고</p> <p>- 7명</p> <p>○ 주의</p> <p>- 2명</p> <p>○ 시정(회수)</p> <p>- 부적정하게 지급된 교연비 합계 30,150,420원을 당사자들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 하기 바람</p>
한국 해양대	94. 학생지도비 실적 제출 부적정	<p>【학생지도실적과 초과근무 실적 중복】 - ①</p> <p>○ 직원 7명은 초과근무로 학생지도가 불가함에도 학생지도 총 13건을 실적으로 제출하여 학생지도비 합계 2,475,000원 수령</p> <p>【학생지도실적과 출장 등 실적 중복】 - ②</p> <p>○ 직원 22명은 출장 및 교육연수로 학생지도가 불가함에도 학생지도 총 25건의 실적을 제출하여 학생지도비 합계 4,975,000원 수령</p> <p>○ 교수 79명은 관외출장, 국외출장, 교육연수로 대면 학생상담이 불가함에도 학생 오프라인 상담 실적을 총 253회 제출하여 학생지도비 합계 47,500천원 수령</p>	<p>○ 경징계</p> <p>- 1명</p> <p>○ 경고</p> <p>- 37명</p> <p>○ 주의</p> <p>- 79명</p> <p>○ 시정(회수)</p> <p>- 부적정하게 지급된 학생지도비 합계 61,300</p>

대학명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교 5명은 출장으로 대면 학생지도가 불가함에도 학생지도 총 7회의 실적을 제출하여 학생지도비 합계 800,000원 수령 ○ 교수 12명은 국외연수(공무외국외여행)로 대면 학생상담이 불가함에도 학생 오프라인 상담 총 37회의 실적을 제출하여 학생지도비 합계 4,500,000원 수령 <p>【학생지도 실적과 근무상황(재택근무) 실적 중복】 - ③</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 1명은 재택근무로 학생지도가 불가함에도 학생 멘토링 총 7건을 실적으로 제출하여 학생지도비 합계 1,050,000원 수령 <p>【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가이드라인, '18~'20학년도 한국해양대학교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계획】</p>	<p>천원을 당사자들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p>
	95. 연구영역 동일 실적물 중복 제출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 4명은 교연비 연구영역 실적으로 기인정 받은 실적물을 연구영역 다른 항목의 실적으로 제출하여 교연비 합계 5,103천원 중복 수령 ○ 교수 1명은 이미 실적으로 제출하여 인정받고 교연비를 수령한 동일한 연구 실적물을 연도를 달리하여 실적으로 제출하고 교연비 264천원을 중복 수령 <p>【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가이드라인, 한국해양대학교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지원사업 기본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고 - 2명 ○ 주의 - 2명 ○ 시정(회수) - 부적정하게 지급된 교연비 합계 5,367천원을 당사자들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한발대	96. 학생지도비 실적 제출 부적정	<p>【학생지도 실적과 초과근무 실적 중복】 - 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직원 8명은 초과근무로 학생지도가 불가함에도 학생지도 총 12건을 실적으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징계 - 1명

대학명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분
		<p>하여 학생지도비 합계 2,723,000원 수령</p> <p>【학생지도 실적과 출장실적 중복】 - ②</p> <p>○ 교직원 78명은 출장으로 학생지도가 불가함에도 학생지도 총 321건을 실적으로 제출하여 학생지도비 합계 26,539,000원 수령</p> <p>【학생지도 실적과 복무(연가 등) 실적 중복】 - ③</p> <p>○ 교직원 52명은 연가 등으로 학생지도가 불가함에도 학생지도 총 91건을 실적으로 제출하여 학생지도비 합계 12,173,000원 수령</p> <p>【학생지도 실적과 근로장학생 근로시간내 중복】 - ④</p> <p>○ 교직원 8명은 멘티 대상 학생이 근로장학생으로 근무하고 있어 학생지도가 불가함에도 학생지도 총 31건의 실적을 제출하여 학생지도비 합계 5,510,000원 수령</p> <p>【학생지도 실적과 근무시간내 중복】 - ⑤</p> <p>○ 직원 10명은 근무시간 내 학생지도 총 35건의 실적을 제출하여 학생지도비 합계 10,070,000원 수령</p> <p>【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가이드라인, '18~'20학년도 한밭대학교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계획】</p>	<p>○ 경고 - 17명</p> <p>○ 주의 - 118명</p> <p>○ 시정(회수) - 부적정하게 지급된 학생지도비 합계 57,015천원을 당사자들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p>
	97. 내부학생 지도와 무관한 실적 인정 부적정	○ 교직원 2명이 제출한 내부학생(학부 및 대학원생) 지도가 아닌 최고경영자과정 수강생 대상 특강실적을 교육영역 실적으로 인정하여 교연비 합계 900천원 지급	<p>○ 기관주의</p> <p>○ 시정(회수) - 부적정하게 지급된 교연비 합계 900천원을 관</p>

대학명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p>【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가이드라인, '18~'20학년도 한밭대학교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기준】</p>	<p>련자들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p>
경인 교육대	98. 연구영역 동일 실적물 중복 제출 부적정	<p>○ 교수 14명은 연구영역 학술지 게재논문 실적 또는 학술대회 논문발표 실적으로 제출하여 교연비 합계 59,210천원을 지급받고도 동일 연구과제를 연구영역 타 지표 실적으로 제출하여 교연비 합계 54,560천원 중복 수령</p> <p>【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가이드라인, '18~'20학년도 한밭대학교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기준】</p>	<p>○ 경징계 - 5명</p> <p>○ 경고 - 9명</p> <p>○ 시정(회수) - 부적정하게 지급된 교연비 합계 54,560,000원을 당사자들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p>
	99. 학생지도비 실적 제출 부적정	<p>【학생지도실적과 근무상황 중복】 - ①</p> <p>○ 교직원 12명은 연가, 출장 등의 사유로 학생지도가 불가함에도 학생지도 총 16건을 실적으로 제출하여 학생지도비 합계 3,650,000원 수령</p> <p>【학생지도 실적 중복 신청·인정】 - ②</p> <p>○ 교직원 4명은 대규모 교내행사 학생안전지도 성격의 안전지킴이 활동을 학생지도 실적으로 제출하여 인정받고도, 위 학생지도 시간내에</p>	<p>○ 경고 - 1명</p> <p>○ 주의 - 16명</p> <p>○ 시정(회수) - 부적정하게 지급된 학생지도비 합계 8,725천원을 당사자들로부터</p>

대학명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p>이루어진 학생면담 실적 5건을 중복으로 제출하여 학생지도비 합계 1,550,000원 수령</p> <p>【직원 근무시간 내 학생지도 실적】 - ③</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 및 조교 2명은 근무시간 내에 실시한 멘토링 실적 총 15건을 학생지도 실적으로 제출하여 학생지도비 합계 3,525,000원 수령 <p>【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가이드라인, '18~'20학년도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계획】</p>	<p>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p>
<p>공주 교육대</p>	<p>100. 학생지도비 실적 제출 부적정</p>	<p>【학생지도 실적·초과근무 실적 중복】 - 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 4명은 초과근무로 학생지도가 불가함에도 학생지도 총 4건을 실적으로 제출하여 학생지도비 합계 400,000원 수령 <p>【교내 행사 참여 관련 학생지도 실적 인정】 - 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 82명의 단순 교내 행사참여 357회에 대해 학생지도 실적으로 인정하고 학생지도비 합계 35,700천원 지급 <p>【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가이드라인】</p>	<p><①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의 - 4명 ○ 시정(회수) - 부적정하게 지급된 학생지도비 합계 400천원을 관련지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로 세입조치하기 바람 <p><②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의 - 3명 ○ 통보 - 실적에 근거하여 학생지도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마련하여 사업을 운영하기 바람

대학명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광주 교육대	101. 학생지도 실적자료 검증 부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학년도에 진행된 학생 멘토링(대면) 173회(교내 134회, 교외 39회)에 대하여 상담일지 이외의 실적 증빙자료(사진, 영수증 등) 없이 학생지도 실적을 인정하여 학생 지도비 지급 ○ 교원 21명이 학생상담시간을 미입력하거나 10분 이하로 실시한 학생상담 188건에 대해 학생지도 실적으로 인정 <p>【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가이드라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경고 ○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지도 인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수행실적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업을 운영하기 바람
	102. 교연비 지급계획 공개 지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학년도부터 2020학년도까지 3회에 걸쳐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기본 계획을 최소 1년 3월 11일에서 최대 3년 4월 27일까지 지연 공개 <p>【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주의 ○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연비 지급 계획을 적시에 공개하기 바람
	103. 교연비 예·결산 및 지급 계획 공개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년~'21년까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기본 계획을 최소 10일에서 최대 756일까지 지연 공개 <p>【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주의
104. 학생지도영역 실적 확인 및 인정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학년도부터 2020학년도까지 학생지도 영역 세부 운영 기준을 수립하면서 지표별 운영계획에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 하도록 하지 아니함 ○ 교수 3명의 비대면 활동에 대해 객관적인 증빙자료 없이 학생지도일지만으로 합계 28점의 실적을 인정하여 학생지도비 합계 1,120천원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경고 ○ 경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명 ○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지도비 지급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확인 하여 지급하기 	

대학명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분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바람
	105. 학생지도비 실적 제출 부적정	<p>【근무시간과 학생지도 중복】 - 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 1명은 2018.8.24.(금) 근무시간 내에 실시한 “학생멘토링” 실적을 제출하여 학생지도비 160천원 수령 <p>【동일시간 대 학생지도 실적 중복】 - 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직원 15명은 같은 날, 동일 시간 대(일부 중첩 포함)에 실시한 학생지도실적 2건 이상을 중복으로 제출하여 학생지도 실적 총 20건 (중복포함)을 중복으로 인정받고 학생지도비 합계 2,400천원 수령 <p>【근로장학생 근로시간중 학생지도】 - ③</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직원 45명은 지도대상 학생이 근로장학생으로 근무하고 있어 학생지도가 불가함에도 동일한 시간 학생상담 실적 총 98건을 제출하여 학생지도비 합계 8,240천원 수령 <p>【학생지도실적과 출장 중복 등】 - ④</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직원 26명은 출장으로 학생지도가 불가함에도 같은 날 출장시간과 중복으로 학생지도 실적 총 52건을 제출하여 학생지도비 합계 5,920천원 수령 <p>【학생지도실적과 초과근무 중복】 - 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직원 3명은 초과근무로 학생지도가 불가함에도 학생지도 총 3건을 제출하여 학생지도비 합계 480천원 수령 <p>【학생지도실적과 복무 중복】 - 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직원 20명은 연가 등의 사유로 학생지도가 불가함에도 학생지도 실적 총 28건을 제출하여 학생지도비 합계 3,920천원 수령 <p>【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가이드라인, '18~'20학년도 광주교육대학교 교육 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고 - 6명 ○ 주의 - 74명 ○ 시정(회수) - 부적정하게 지급된 학생지도비 합계 21,120,000원을 당사자들로 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 조치하기 바람

대학명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106. 개인차량 입·출차 관련 학생지도 실적 인정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직원 19명이 입출차기록에 차량이 최종 출차한 것으로 기록되어 교내에 부재중이었음에도 총 72회에 걸쳐 학생지도활동을 실시하였다는 실적을 인정하여 학생지도비 합계 11,520천원 지급 <p>【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18~'20학년도 광주교육대학교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경고 ○ 시정(회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정하게 지급된 학생지도비 합계 11,520천원을 당사자들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 하기 바람
	107. 학부생 졸업논문 지도 실적 인정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 86명이 실시한 학부생 1,780명에 대한 졸업 논문지도를 교연비 실적으로 인정하고 교연비 총 143,100천원 지급 <p>【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가이드라인, 광주교육대학교 학칙, 광주교육대학교 졸업논문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경고 ○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교연비 심사를 철저히 하기 바람
	108. 강의자료 개발 실적 중복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 14명은 이미 강의자료 등(콘텐츠 포함) 개발 실적으로 인정받아 교연비를 수령한 실적 총 47건을 중복 제출하여 교연비 합계 4,700천원 수령 <p>【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가이드라인, '18~'20학년도 광주교육대학교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명 ○ 시정(회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정하게 지급된 교연비 합계 4,700천원을 당사자들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 하기 바람
	109. 기 연구과제 결과물 교연비 실적 제출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 1명은 교외연구과제로 선정되어 연구비를 지급 받고도 동 연구과제 결과물을 교연비 실적으로 중복 제출하여 교연비 합계 7,600천원 이중 수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징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명 ○ 시정(회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정하게 지급된 교연비 합계

대학명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110. 제자 학위논문 관련 실적 제출 부적정	<p>【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가이드라인, '18~'20학년도 광주교육대학교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 계획】</p> <p>○ 교수 6명은 제자 학위논문을 요약한 공동저자 논문 10건을 연구영역 실적으로 제출하여 인정 받고 교연비 합계 21,060천원 수령</p> <p>【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가이드라인, '20학년도 광주교육대학교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 계획】</p>	<p>7,600천원을 0000과 교수 000으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 하기 바람</p> <p>○ 경고 - 5명</p> <p>○ 주의 - 1명</p> <p>○ 시정(회수) - 부적정하게 지급된 교연비 합계 21,060천원을 당사자들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p>
대구 교육대	111. 학생지도비 실적 제출 부적정	<p>【학생지도 실적과 초과근무 중복 관련】 - ①</p> <p>○ 교직원 9명은 초과근무로 학생지도가 불가함에도 학생지도 총 11건을 실적으로 제출하여 학생지도비 합계 2,220,000원 수령</p> <p>【학생지도 실적과 출장 중복 관련】 - ②</p> <p>○ 교직원 33명은 출장으로 학생지도가 불가함에도 학생상담 등 학생지도 실적 총 57건을 실적으로 제출하여 학생지도비 합계 8,100,000원 수령</p> <p>【학생지도실적과 복무상황 중복 관련】 - ③</p> <p>○ 교직원 18명은 연가 등으로 학생지도가 불가함에도 학생지도 총 23건의 실적을 제출하여 학생지도비 합계 3,780,000원 수령</p> <p>【근로장학생 근무시간과 학생지도 실적 중복 관련】 - ④</p> <p>○ 교직원 53명은 멘티 대상 학생이 근로장학생으로 근무하고 있어 학생지도가 불가함에도</p>	<p>○ 경고 - 13명</p> <p>○ 주의 - 71명</p> <p>○ 시정(회수) - 부적정하게 지급된 학생지도비 합계 32,040천원을 당사자들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p>

대학명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분
		<p>학생지도 총 133건의 실적을 제출하여 학생 지도비 합계 17,940,000원 수령</p> <p>【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가이드라인, 대구교육대학교 재정·회계규정, 대구교육대학교 2018~2020학년도 교직원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기준】</p>	
	112. 통상업무 수행 학생 지도 실적 인정	<p>○ 교직원 87명이 수행한 교직원 본연의 통상 업무 총 528건에 대해 학생지도영역 실적 으로 인정</p> <p>【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가이드라인】</p>	<p>○ 기관경고</p> <p>○ 통보</p> <p>- 부서의 통상 업무를 학생지도 사업 으로 수행하지 않도록 관리하기 바람</p>
	113. 교육영역 공통지표 미충족자 실적 인정 부적정	<p>○ 교육영역 공통지표 지급대상자가 아닌 교원 2명이 제출한 교육영역 공통지표인 연구활동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실적으로 인정하여 공통 지표 지급액 80% 및 선택지표(교재개발 등) 실적급 등 교연비 합계 23,040천원 지급</p> <p>【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2018~2020학년도 대구교육대학교 교육·연구 및 학생 지도비용 지급기준】</p>	<p>○ 기관경고</p> <p>○ 시정(회수)</p> <p>- 부적정하게 지급 된 교연비 합계 23,040천 원 을 당사자들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 하기 바람</p>
부산 교육대	114. 교육·연구 및 학생 지도비 지급 실적 인정 기준 미흡	<p>○ 교원 5명이 동일 시간에 5명 이상 학생지도한 실적 96건, 1,910점을 인정하는 등 실적 인정에 대한 객관적 기준없이 교원이 입력 한대로 실적을 인정하도록 운영</p> <p>○ 2019. 5. 2019학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계획 수립 시 영역간 한도액 통합 및 연구년 참여 교원에 대한 1인당 한도액 제외 등으로 변경하여 지급 한도액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는 등 포괄적으로 교육·연구 지도비의 지급기준 설정</p> <p>【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가이드라인】</p>	<p>○ 기관경고</p> <p>○ 통보</p> <p>- 학생지도 인정 기준을 구체적 으로 마련하여 수행실적을 확 인할 수 있도록 학생지도비 지급 기준을 마련하기 바람</p>

대학명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분
	115.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심사위원회 구성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를 심의하는 3개 심사위원회를 교수 등 동일 직종으로만 구성·운영 <p>【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가이드라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경고 ○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심사위원회 구성 시 교원, 직원, 조교 등 모든 직종이 참여하도록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기 바람
	116. 학생지도비 실적 제출 부적정	<p>【초과근무 실적과 학생지도 실적 중복】 - 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 2명은 초과근무로 학생지도가 불가함에도 학생지도 총 2건을 실적으로 제출하여 학생지도비 합계 600,000원 수령 <p>【학생지도 실적과 출장 시간 중복】 - 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직원 9명은 출장으로 학생지도가 불가함에도 학생지도 18건을 실적으로 제출하여 학생지도비 합계 3,900,000원 수령 <p>【학생지도 실적과 근무상황(연가 등) 중복】 - ③</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직원 6명은 연가 등으로 학생지도가 불가함에도 학생지도 총 6건을 실적으로 제출하여 학생지도비 합계 1,300,000원 수령 <p>【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가이드라인, 부산교육대학교 '18~'20학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명 ○ 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명 ○ 시정(회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정하게 지급된 학생지도비 합계 5,800,000원을 당사자들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117. 제자 학위논문 관련 실적 제출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 1명은 2017학년도 2학기 제자 석사 학위 논문을 학술지에 교신저자로 게재하고 2019년 연구영역 학술연구과제 실적으로 제출하여 교연비 3,500천원 수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명 ○ 시정(회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정하게 지급된 교연비 3,500천원을 당사지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대학명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가이드라인】	회계에 세입조치 하기 바람
서울 교육대	118. 학생지도비 실적 제출 부적정	<p>【학생지도 실적과 초과근무 실적 중복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 1명은 2020.12.9.(수) 18:00부터 22:26까지 초과근무 중으로 학생지도가 불가함에도 같은 날 18:00부터 21:00까지 ‘학내순찰 및 몰카 탐지 활동’ 학생지도 실적을 제출(인정점수 10.5점)하여 학생지도비 210,000원 수령 <p>【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가이드라인, ‘18~’20학년도 서울교육대학교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명 ○ 시정(회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정하게 지급된 학생지도비 합계 210천원을 당사자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119. 학생지도비 실적 인정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직원 113명(누계)이 학생지도 실적으로 제출한 ‘교수채용 지원’ 등 교내 행정지원 활동을 실적으로 인정하여 학생지도비 29,435,000원 지급 <p>【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가이드라인, ‘18~’20학년도 서울교육대학교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경고 ○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지도와 무관한 ‘행정지원 활동을 학생지도 영역 실적으로 인정하여 비용을 지급하지 않도록 운영하기 바람
	120. 개인차량 입·출차 관련 학생지도 실적 인정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직원 22명이 입출차기록 상 교내에 부재중이었음에도 총 218회에 걸쳐 동 시간에 활동하였다고 제출한 학생지도 실적을 인정하여 학생지도비 합계 25,130,000원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경고 ○ 시정(회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정하게 지급된 학생지도비 합계 25,130천원을 당사자

대학명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분
		<p>【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가이드라인, '18~'20학년도 서울교육대학교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기준】</p>	<p>들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p>
<p>전주 교육대</p>	<p>121. 교연비 예·결산 및 지급 계획 미공개 및 지연공개</p>	<p>○ 2018년도부터 2021년까지 '교연비 지급 계획'은 공개하지 않고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예산·결산을 최소 24일에서 최대 398일까지 지연 공개</p> <p>【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p>	<p>○ 기관경고</p>
	<p>122. 학생지도비 실적 제출 부적정</p>	<p>【학생지도실적과 초과근무 실적 중복】 - ①</p> <p>○ 교직원 2명은 초과근무 중으로 학생지도가 불가함에도 같은 날 동일(중복)한 시간 학생지도 실적 총 2건을 제출하여 학생지도비 합계 200,000원 수령</p> <p>【직원 근무시간 내 학생지도 실적 제출 관련】 - ②</p> <p>○ 직원 1명은 근무시간 내 학생지도 실적 5건을 제출하여 학생지도비 합계 400,000원 수령</p> <p>【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가이드라인, '18~'20학년도 전주교육대학교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계획】</p>	<p><①관련></p> <p>○ 주의 - 2명</p> <p>○ 시정(회수) - 부적정하게 지급된 학생지도비 합계 200천원을 당사자들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p> <p><②관련></p> <p>○ 주의 - 1명</p> <p>○ 시정(회수) - 부적정하게 지급된 학생지도비 합계 400천원을 당사자들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p>

대학명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123. 교육영역 강의평가 점수 실적 인정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20학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계획(전주교대)」에 교육영역 공통지표로 강의평가점수를 실적으로 인정하도록 정하고, 강의평가점수에 따라 학기별로 강의평가 점수가 3.0이상일 경우 30~50만원까지 교연비를 차등 지급하도록 하여, - 2018학년도부터 2020학년도까지 312회에 걸쳐 교육영역 공통지표로 강의평가점수를 실적으로 인정하고 교연비 합계 117,773,220원 지급 <p>【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가이드라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경고 ○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지급계획을 운영하기 바람
진주 교육대	124. 학생지도비 실적 제출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직원 26명은 출장 등으로 학생지도가 불가함에도 학생지도 총 47건을 실적으로 제출하여 학생지도비 합계 7,020,000원 수령 ○ 직원 1명은 학생지도 실적 총 24건을 허위로 제출하여 학생지도비 합계 4,290,000원 수령 <p>【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가이드라인, 2018~2020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용 지급 계획(진주교육대학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징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명 ○ 경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명 ○ 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명 ○ 시정(회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정하게 지급된 학생지도비 합계 11,310천원을 당사자들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125. 안전지도 실적 인정 대상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 ○○○대회 행사 안전지도 계획 등 총 4건의 안전지도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지도 실적 인정 대상이 아닌 초·중·등 학생 등에 대한 안전지도 실적을 인정하도록 하고, - 이에 따라, 교직원 68명에게 어린이 ○○○대회 행사 안전지도 등 안전지도 실적 인정 대상이 아닌 초·중·등학생 등 대상 안전지도 실적 합계 300시간을 학생지도 실적으로 인정하여 학생지도비 합계 18,000천원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경고 ○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연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학생지도 비용을 지급하기 바람

대학명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분
		<p>【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가이드라인】</p>	
	<p>126. 통상업무 학생지도 실적 인정</p>	<p>○ 교원 73명의 논문지도 등 통상업무 총 798건을 학생지도 실적으로 인정하여 학생지도비 지급</p> <p>【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p>	<p>○ 기관경고</p> <p>○ 통보</p> <p>- 향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계획 수립 시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바람</p>
	<p>127. 연구영역 실적항목 지표설계 부적정</p>	<p>○ 교수 19명(누계)에게 21회(누계)에 걸쳐 과거 교내연구비를 지급받은 연구과제에 대해 연구장려금으로 교연비 합계 126,250천원 지급</p> <p>【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가이드라인】</p>	<p>○ 기관경고</p> <p>○ 통보</p> <p>- 동일한 연구실적이 중복 인정되어 교연비가 중복 지급 되지 않도록 지급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바람</p>
	<p>128. 연구영역 실적항목 심사 부적정</p>	<p>【연구영역 실적항목 심사 관련】 - ①</p> <p>○ 교수 6명이 15건을 외부 주관기관의 공모를 거쳐 선정되지 못한 자료를 제출하였는데도 해당 자료를 적정하게 심사하지 않고 연구영역 실적으로 인정하여 교연비 24,944천원 지급</p> <p>【연구영역 동일 실적물 중복 인정】 - ②</p> <p>○ 교수 4명이 4건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을 교연비 연구영역 내 연구실적으로 중복 제출하였음에도 연구영역 실적으로 인정하여 교연비 합계 2,400천원 중복 지급</p>	<p><①, ②관련></p> <p>○ 기관경고</p> <p><② 관련></p> <p>○ 시정(회수)</p> <p>- 부적정하게 지급된 교연비 합계 2400천원을 관련 자들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p>

대학명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분
		<p>【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가이드라인, 진주교육대학교 2018~2019학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등의 비용 지급 계획】</p>	
<p>청주 교육대</p>	<p>129. 학생지도비 실적 제출 부적정</p>	<p>○ 교원 1명은 출장으로 학생지도가 불가함에도 학생지도 총 1건을 실적으로 제출하여 학생지도비 합계 200,000원 수령</p> <p>【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가이드라인】</p>	<p>○ 주의 - 1명</p> <p>○ 시정(회수) - 부적정하게 지급된 학생지도비 합계 200,000원을 당사자들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 하기 바람</p>
	<p>130. 공무외 국외연수 중 학생지도 부적정</p>	<p>○ 교수 3명은 공무외국외여행(자율연수) 시 학생지도 실적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음에도 학생지도 실적 총 11회를 제출하여 인정받고 학생지도비 합계 3,100,000원 수령</p> <p>【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가이드라인, 청주교육대학교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계획】</p>	<p>○ 경고 - 2명</p> <p>○ 주의 - 1명</p> <p>○ 시정(회수) - 부적정하게 지급된 학생지도비 합계 3,100,000원을 교수 000 등 3명으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 하기 바람</p>
	<p>131. 학생지도영역 실적 심사 등 부적정</p>	<p>○ 학생지도영역 지도활동 증빙자료로 내부기안, 지도일지 등만 제출하게 하고 행사 결과물, 사진 등 구체적인 증빙 없이 심사하고 학생지도 실적 인정</p>	<p>○ 기관주의</p> <p>○ 주의 - 7명</p>

대학명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 7명은 2020학년도에 학생지도실적 총 51건을 제출하면서 학생지도일지에 지도 시간 또는 일자, 지도내용, 지도대상 학생 등 미기재 <p>【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가이드라인, 청주교육대학교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내용 및 시간 지도학생 입력 등 실적보고 관련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갖춰 학생지도영역 실적심사를 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포함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람
	132. 연구영역 설계·운영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학회활동을 교연비 연구영역 선택지표로 설정하면서 별도 역할 수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또는 확인 없이 국내학회활동의 '단순참가와 '별도 역할 수행' 구분 하지 않고 모두 실적으로 인정하는 「청주교육대학교 '18~'20학년도 대학회계 교육·연구 및 학생 지도 비용 지급 계획」 수립·운영 ○ 연구영역의 중점지표로 '기본 연구 지원'을 설정하고, 000000 외의 학술지 등재 논문 및 전문학술도서 외의 저서는 실적물로 인정하지 않아 청주교육대학교 논문집 등 기타 학술지에 논문을 등재하고도 실적물을 제출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논문 등재(저서 발간 포함)를 하지 않은 자와 동일하게 연구영역 실적물 미제출로 처리하여 기본 연구지원비 80%(480만원/연)를 차등 없이 지급·운영 <p>【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가이드라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경고 ○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실적물 미제출자에 차등 적용 등 합리적 연구역량 강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춘천 교육대	133. 교육·연구 및 학생 지도비용 지급 계획 미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학년도 및 2020학년도 교육·연구·학생 지도비용 지급 계획'을 2021. 5. 감사일 현재 까지 대학 홈페이지에 미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주의

대학명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분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134. 교육·연구 및 학생 지도비 교육영역 심사 위원 구성 부적정	○ 2019학년도 및 2020학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교육영역 심사위원을 교원 5명 으로만 구성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가이드라인】	○ 기관주의
	135. 학생상담 및 멘토링 시간 미확인 학생지도 비용 지급	○ 교수 및 조교 160명(중복포함)에게 학생지도 비용을 지급하면서 학생상담 및 멘토링 활동 시간이 건별 30분 이상 실시되었는지 확인 하지 아니하고 학생지도비용 합계 107,623,970원 지급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2018학년도 및 2020학년도 춘천교육대학교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 지침】	○ 기관경고 ○ 통보 - 실적검증이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학생지도비 실적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
	136. 개인차량 입·출차 관련 학생지도 실적 인정 부적정	○ 교직원 7명은 2020. 8.부터 2020. 11.까지 입출차기록 상 교내에 부재중이었음에도 총 8회에 걸쳐 같은 시간에 활동하였다는 학생지도 실적을 인정하여 학생지도비 합계 3,482,910원 지급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2020학년도 춘천교육대학교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 지침】	○ 기관경고 ○ 시정(회수) - 부적정하게 지급된 학생지도비 합계 3,482,910원을 당사자들로 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한국 복지대	137. 학생지도비 실적 제출 등 부적정	【직원 근무시간 내 학생지도 관련】 - ① ○ 교직원 20명은 근무시간 중 상담실적 총 270회를 학생지도 실적으로 제출하여 학생지도비 합계 16,859,030원 수령	<⑦관련> ○ 기관주의 <①, ②, ③, ④, ⑤, ⑥ 관련>

대학명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분
		<p>【학생지도실적과 출장 중복 관련】 - 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직원 20명은 출장으로 학생지도가 불가함에도 동일(중복) 시간에 학생지도 총 38회를 실시한 것으로 학생지도영역 실적을 제출하여 학생지도비 합계 2,426,300원 수령 <p>【학생지도실적과 초과근무 중복 관련】 - ③</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 2명은 총 62회 통학차량 운행 사유로 초과근무를 실시하고도 같은 기간 동일(중복) 시간에 실시한 안전지도(탑승전 발열체크)를 학생지도 실적으로 제출하여 학생지도비 합계 708,000원 수령 <p>【학생지도실적과 근무상황(복무) 중복 관련】 - ④</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직원 11명은 병가 사용 등으로 학생지도가 불가함에도 동일(중복) 시간에 총 14회 학생지도를 실시한 것으로 학생지도 실적을 제출하여 학생지도비 합계 973,600원 수령 <p>【상담실적 중복 인정 관련】 - 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 3명은 2018학년도 및 2020학년도에 학생상담을 총 4회 실시하고 이를 중증장애 학생 상담 실적으로 제출하여 학생지도비 192,860원 중복 수령 <p>【학생지도 허위실적 제출 관련】 - 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직원 39명은 학생안전지도에 총 162회 참여하였음에도 총 299회 참여한 것으로 학생지도 실적을 제출하여 학생지도비 합계 14,618,780원 과다 수령 <p>【부실 상담실적 인정 관련】 - ⑦</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직원 77명이 총 2,484건의 100자('18년), 200자 미만('19년, '20년) 상담내역을 실적으로 제출하였음에도 이를 인정 <p>【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가이드라인, 2018~2020학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계획(한국북지대학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징계 - 1명 ○ 경고 - 18명 ○ 주의 - 43명 ○ 시정(회수) - 부적정하게 지급된 연변 ①, ②, ③, ④, ⑤, ⑥ 관련 학생지도비 합계 35,778,570원을 당사으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하기바람

대학명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분
	138. 교육영역 지표변경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와 협의하지 않고 '교육영역 지표, 평가 방법'을 변경하여 교육영역 선택 지표 중 사회맞춤형 교육지표의 협약 실적을 체결 당해연도와 그 다음해 2회까지 실적 인정이 가능하도록 지표를 신설·운영하여 교원 9명이 제출한 사회맞춤형 업무협약 실적에 대해 '19학년도 2,745천원을 지급하고 '20학년도 에도 동일실적에 대해 3,150천원 지급 <p>【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가이드라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경고 ○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적이 이중으로 인정되지 않도록 인정지표를 삭제 하기 바람
	139. 교육영역 공통지표 실적 인정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영역 공통지표 실적 기준에 해당되지 않거나 실적을 충족하지 않은 교원 3명에게 공통영역 실적금 합계 2,768천원 지급 <p>【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2018~2020학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계획 (한국복지대학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경고 ○ 시정(회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다 지급된 교육 영역 실적금 합 계 2,768천원을 당사자들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 하기 바람
	140. 실적인정기간 이전 연구실적물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직원 1명은 2016. 5. 4. 특허 등록된 개인 명의의 공동발명 특허를 2019학년도 연구 영역 실적으로 제출하여 실적금 1,905,200원 수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명 ○ 시정(회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정하게 지급된 연구영역 실적금 1,905,200 원을 당사자로부터 회수 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 하기 바람 ○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명의로 출 원·등록된 지식

대학명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분
		【국가재정법 제3조,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2019학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계획(한국복지대학교)】	재산권을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자체심의 등을 거쳐 산학협력단 명의로의 변경여부를 결정하기 바람
	141. 외부기관 연구비 지원 연구실적물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 4명은 외부기관으로부터 연구비 총 18,488,460원을 지원받아 수행한 연구과제 결과물을 연구영역 실적으로 제출하고 연구비 7,298,200원 수령 <p>【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2018~2020학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계획(한국복지대학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고 - 4명 ○ 시정(회수) - 부적정하게 지급된 연구영역 실적금 7,298,200원을 당사자들로 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 조치하기 바람

감사결과의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학교(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익적 조치입니다. 따라서 감사결과 실명이 공개된 모든 학교(기관)가 비리에 연관되어 있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